

한·중 농림수산분야  
협력방안

빈

면

# 한·중 농림수산분야 협력방안

## 한·중 수교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실무작업반

총	괄: 최 양 부(부 원 장)
중국 현황 및 교역제도:	최 세 균(부연구위원)
한 중 교 역 현 황	김 동 민(책임연구원)
중 합 대 책	임 정 빈(연 구 원)
곡 물 부 문:	안 기 옥(책임연구원)
축 산 부 문:	이 성 규(책임연구원)
과 실 및 채 소 부 문:	김 형 모(책임연구원)
특 작 부 문:	이 동 필(부연구위원)
자 재 산 업 부 문:	김 철 민(책임연구원)
임 업 부 문:	석 현 덕(책임연구원)
수 산 업 부 문:	옥 영 수(책임연구원)
유 통 부 문:	김 정 기(책임연구원)
중 국 농 정:	고 재 모(초청연구원)

빈

면

## 머 리 말

한·중 교역규모는 국교 수립 이전인 1991년에 벌써 58억 달러에 이르렀고, 중국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두 나라 교역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한·중 교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수교 이후 교역 환경이 개선되고 인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두 나라 교역 및 교류 증대는 양국 모두의 국익과 우호 증진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이제 한·중 농림수산분야도 국제화·전문화의 방향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편만의 일방적 수입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통상마찰은 장기적으로 양국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수입 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나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국민건강 위협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는 두 나라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간의 건전한 교역관계 정립을 위해 「한·중 수교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대책위원회의 실무작업반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중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방안, 한국의 대중국 농림수산분야 투자 및 수출 가능 분야 발굴, 수입 급증에 대한 국내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자료 부족으로 미진한데가 많지만, 이 분야의 정책 수립이나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2. 12

院長 許信行

비

면

# 목 차

제 1 장 대책수립 개요	
1. 배경 .....	1
2. 대책수립 기본방향 .....	3
3. 작업추진 및 체계 .....	3
제 2 장 중국의 농정과 농업	
1. 중국의 농정변천 .....	5
2. 중국의 농업 .....	8
제 3 장 중국의 교역현황 및 무역제도	
1. 교역현황 .....	17
2. 무역제도 .....	23
제 4 장 한중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	
1. 한중 교역현황 .....	27
2.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	28
제 5 장 한중 농림수산물분야 협력방안	
1. 일반적 전망 및 문제점 .....	35
2. 부문별 전망 및 대책 .....	37
가. 곡물부문 .....	37
나. 축산부문 .....	46

다. 과실 및 채소부문 .....	54
라. 특작부문 .....	66
마. 자재산업부문 .....	83
바. 임업부문 .....	93
사. 수산업부문 .....	103
3. 종합대책 .....	112
가. 교류 및 협력강화 .....	112
나.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 .....	113
다. 검역제도 개선 .....	121
라. 유통제도 개선 .....	128
마. 조사연구 강화 .....	133

## 표 목 차

표 1 중국의 농정과 주요 내용 .....	9
표 2 한중간 주요 경제지표 비교 .....	12
표 3 농업총생산액의 구성변화 .....	13
표 4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	14
표 5 사회총생산액의 구성 .....	16
표 6 중국의 대외무역실적 추이 .....	18
표 7 1991년도 중국의 주요 국별 수출입 실적 .....	19
표 8 1차 상품별 수출추이 .....	20
표 9 중국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추이, 1987~90 .....	21
표 10 중국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1987~90 .....	23
표 11 중국의 수입상품 분류 .....	25
표 12 중국의 수출상품 분류 .....	25
표 13 한중 교역추이, 1988~91 .....	28
표 14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입중 중국의 비중 .....	29
표 15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비중 .....	30
표 16 중국산 주요 농산물 수입실적 .....	31
표 17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유형별 수입현황, 1991 .....	34
표 18 곡물생산 현황 .....	37
표 19 대중국 곡물 및 곡물가공품 류별 수입현황 .....	39
표 20 중국의 곡물수요예측 .....	42
표 21 중국의 축산물 생산현황 .....	46
표 22 중국의 축산물 수출현황 .....	47

표 23	1993·1994년의 축산물 수입자유화예시 품목	48
표 24	중국의 사료곡물 생산현황	50
표 25	중국의 사료곡물 수출현황	51
표 26	중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입현황	51
표 27	중국으로부터의 대두박 수입현황	52
표 28	중국의 과일생산 현황	55
표 29	지역(성,시)별 과일생산 현황, 1990	56
표 30	우리나라 및 중국의 양잠업 실태	66
표 31	우리나라의 누에고치 및 생사 수입실태	68
표 32	누에고치 및 생사의 가격경쟁력 비교	69
표 33	한국 및 중국의 약용작물 생산 실태	72
표 34	한국 및 중국의 한약재 교역 실태	74
표 35	한국과 중국의 주요 한약재 가격비교	75
표 36	중국, 홍콩에 대한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 실태	78
표 37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	83
표 38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	84
표 39	주요 농기계산업 현황	84
표 40	기계화 면적 및 기계화율 목표	85
표 41	농기계 보유목표	85
표 42	농기계 생산목표	86
표 43	연간 농기계 판매액	87
표 44	중국의 비료생산 및 소비실적	87
표 45	중국의 비료 수출입 실적	88
표 46	중국의 농약생산량	88
표 47	한국의 대중국 비료수출 실적	89
표 48	한중 임업생산 비교	93
표 49	한국의 임산물 수출입	94
표 50	한국의 밤 수출현황	97

표 51 중국 및 한국의 밤생산 현황	98
표 52 일본의 국별 생울 및 황울 수입현황	98
표 53 한국의 대추 생산량	100
표 54 중국의 대추 생산량	100
표 55 한중 수산물 교역현황	103
표 56 중국산 수입수산물과 국내가격 비교	104
표 57 한중간의 해면어로어업 생산량 변화 비교	105
표 58 한중간의 해면어로어업 어선세력 및 성능 비교	106
표 59 한일간 수산물 관세 비교	107
표 60 농림수산물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실적	115
표 61 주요 선진국의 산업피해구제기관 비교	117
부표 1 중국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추이, 1987~90	134
부표 2 한중 교역관계의 진전	136
부표 3 관세율표상의 미가공식료품 제외 품목	137

## 그림 목 차

그림 1 한중 수교에 따른 농림수산대책위원회 .....	4
그림 2 성별 농업특성 .....	11
그림 3 대외무역 관리체계 .....	24
그림 4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절차 .....	119
그림 5 우리나라의 검역체계 .....	112

# 제 1 장

## 대책수립 개요

### 1. 배 경

- 우리의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와 함께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한중수교를 계기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추이  
; (1989) 3.5억\$ ⇒ ('91) 8.2억\$ ⇒ (1992.6) 5.3억\$ ⇒ (1992전망) 10억\$
  -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농산물이 대중국 농산물 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국내인건비 상승등으로 국내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품목들도 소량다품목 형태로 수입되고 있음.
- 수교이전에도 한중 농림수산물 교역은 특별한 제한없이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때 단기적으로는 수교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이 예상됨.

- 특히 중국과의 수교로 직교역이 활성화 될 경우 간접 교역에 비해 무역관련 경비가 절감되어 한·중 농림수산물의 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이에따른 수입선전환 등으로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시장점유가 증가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우리의 농림수산물 시장개방확대(BOP 졸업에 따른 1992-94, 1995-97수입자유화계획, UR협상 등)에 따라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증가가 예상됨.
- 최근 값싼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확대와 밀반입 등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농산물에 대한 가격하락 및 국내시장 잠식, 국내 농산물 유통거래질서의 교란, 수입농림수산물의 안전도 문제 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재, 기술, 가공 산업 등의 중국진출 및 수출이 용이해지고 값싼 원료농산물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유리한 측면도 있음.
  - 특히 우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상호보완적 관계를 감안한 분업화,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이용한 생산과 생산된 농림수산물의 중국 소비 및 제3국 수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중수교가 국내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장단기 수입증가 대책 및 교류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한중 농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분업화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농림수산부문 협력 관계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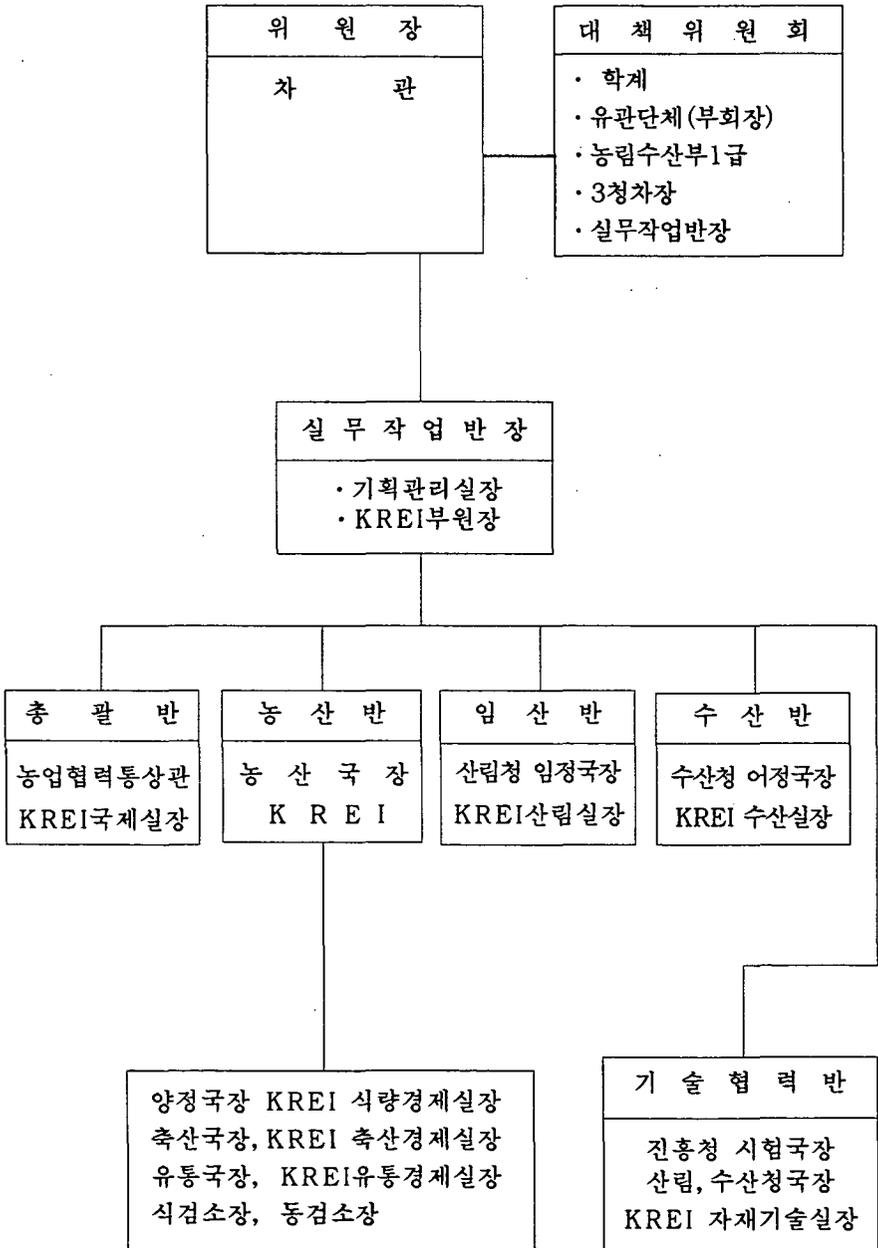
## 2. 대책수립의 기본방향

- 한중 수교에 따라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중국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단기대응방안 수립
- 중·장기적인 한중 농림수산부문 협력방안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수립.

## 3. 작업 추진 및 체계

- 1992. 9. 1: 한중 수교에 따른 농림수산분야의 대책수립을 위한 대책 위원회(위원장 차관) 및 실무작업반 구성.
- 1992.9.20: 분야별 작업반 중심의 작업추진 및 제1차 보고안 작성.
- 1992. 10. 6: 한중 수교이후 농림수산물 수출입전망과 농업협력방안에 관한 전문가 초청간담회.
- 1992. 10. 14~17: 중국산 농림수산물 검역 및 통관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 출장.
- 1992. 10. 20: 실무대책반 간담회.
- 1992. 11. 8~23: 중국 및 일본 현지출장.
- 1992. 12. 2~4: 대책안에 관한 실무협의회.
- 1992. 12. 16: 대책위원회 개최 및 대책안 발표.

그림 1 한중 수교에 따른 농림수산대책위원회



위원장
차관

대책위원회
· 학계
· 유관단체 (부회장)
· 농림수산부1급
· 3청차장
· 실무작업반장

실무작업반장
· 기획관리실장
· KREI부원장

총괄반
농업협력통상관
KREI국제실장

농산반
농산국장
KREI

임산반
산림청 임정국장
KREI산림실장

수산반
수산청 어정국장
KREI 수산실장

양정국장, KREI 식량경제실장
축산국장, KREI 축산경제실장
유통국장, KREI유통경제실장
식검소장, 동검소장

기술협력반
진흥청 시험국장
산림, 수산청국장
KREI 자재기술실장

## 제 2 장

# 중국의 농정과 농업

### 1. 중국의 농정변천

#### 가. 土地改革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처음 실시한 정책조치
  - 봉건적 생산관계 청산과 원활한 식량공급으로 정권의 안정성 도모
- 지주계급의 토지를 몰수,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
- 초기단계에서는 모든 토지와 생산수단의 私有 인정
- 전국의 3억농민과 7,500만에 이르는 토지가 개혁에 포함
-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고취, 3년후인 1952년 戰前 최고수준 회복

#### 나. 互助組制

- 토지개혁의 성공에 의거 당국의 지도하에 1952년 互助組合作 운동이 시작

## ○ 특징 :

- 토지, 가축, 농기구 등 대부분 생산자재는 사유인정
- 계절적 또는 연중 농업생산 협력체로서 역할강화
- 노동과 役牛등은 투입시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
- 일부 생산자재의 공동이용과 기술지도로 단위면적당 생산성 증가
- 총생산량증가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 고취에 기여

## 다. 初級合作社

○ 互助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53년 「初級合作社」제도 실시

## ○ 특징 :

- 농민의 토지소유를 인정하나 임대는 불가능
- 토지생산물에 대해 국가와 집단, 개인의三者간 분배
- 사회주의적 집단경영으로 가는 과도기적 이중요소를 내포

## 라. 高級合作社

○ 互助組와 초급합작사의 시행은 농촌이 戰前의 폐허에서 탈출하는데 기여

○ 제도개혁에 의한 생산성증대에 자극 진일보한 단계의 고급합작사를 모색

## ○ 특징 :

-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자재를 共有化
- 노동과 경영의 집단화
- 공평한 분배방법의 도입
- 주요 식량작물과 면화등에 대해 「統購統鎖」 제도가 실시
-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은 정부에서 통제하며 결정

#### 마. 人民公社制度

- 고급합작사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여기에 대한 원인 및 분석이 진행
  - 그결과 경영규모가 너무 적어서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소규모 합작사를 통합하여 대규모화 작업에 착수 : 「인민공사」체제의 확립
- 특징
  - 종전의 생산조직이 生産隊형태로 확대 편성, 완전한 집단노동의 실현
  - 생산자재를 포함한 종래의 自留地, 가축등 모든 생산수단 및 생활수단까지도 공유제로 확정
  - 분배의 일률성 실시

#### 바. 문화대혁명과 「인민공사」체제의 강화

-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체제의 무리한 추진, 자연재해 등으로 1959년과 1960년에는 농업부문이 크게 위축
- 1960년 11월 「농촌인민공사에 대해 당면한 정책문제의 긴급지시 사항」을 발표, 농촌경제에 대한 조정을 시도
- 1966년 5월부터 「문화대혁명」기에 접어들면서 인민공사체제 강화
- 특징 :
  - “資產階級の 法權을 제한” 한다는 구호하에 상품경제가 완전히 소멸
  - 평균주의의 분배방식이 완전히 정착
  - 「인민공사」를 중심으로 보다 고도의 政社會—이 완성

### 사. 생산책임제

- 1978년 「三中全會」에서 개혁방침 공식화
- 당시 당국이 농촌경제가 낙후한 주요원인을 분석 :
  - ① 생산자의 자주권 제한
  - ② 분배평등주의 만연
  - ③ 과대한 경제관리체제
  - ④ 도·농간의 불균형
- 1979년 「인민공사」체제의 개편과 생산책임제가 실시
- 특징
  - 농가단위의 책임경영 실시
  - 토지의 私人의 소유에 근거한 완전한 개별경영은 불허
  - 분배의 일률성 배제
  -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체제로 전환
  - 가격, 유통체제의 개편

## 2. 중국의 농업

### 가.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 1) 일반개황

- 면적 : 957.7만km<sup>2</sup>
- 인구(1990년 기준) : 114,333만명(연평균 인구증가율 1.25%)
- GNP(1989년 기준) : 3,329억불(1인당 : 302불)
- 행정구역 : 22성, 3직할시, 5차치구
- 무역(1991년 기준) : - 수출 : 719.1억불

표 1 중국의 농정과 주요내용

연 도	정 책	주 요 내 용
1949	○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 토지개혁실시	○ 지주계급의 토지몰수 ○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공평히 무상분배
1950 ~ 52	○ 1952 농업생산 互助組制 실시	○ 농민들의 집단경영에 대한 이 해심 증진, 부족한생산 자재 의 효율적 사용 ○ 반이상의 농민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 농업생산성 크게 향 상
1953 ~ 65	○ 1953년 초급농업합작사 설립 ○ 1956년 고급합작사 설립 ○ 1957년 「농업발전장요」반포 ○ 1958년 「대약진운동」 개시	○ 농업생산 수준의 戰前수준 회 복 ○ 토지를 비롯한 농업생산수단 의 공유제 확대 ○ 가격체제, 분배제도 등 사회 주의화의 초기단계
1958 ~ 65	○ 1958년말 인민공사 설립 ○ 1960년 「농촌인민공사에 대해 당면한 정책문제의 긴급지시 사항」 발표 ○ 1963년-65년 : 劉少奇 鄧小 평등 경제조정정책 실시	○ 농업생산의 부침, 정책조치의 수축과 이완 반복 ○ 유소기, 등소평 등에 의해 추 진된 경제조정정책 기간중 부 분적이긴 하지만 생산책임제 도입실시
1966 ~ 76	○ 「문화대혁명」 ○ 인민공사체제의 공고화	○ 권력투쟁과 정치 지상주의 ○ 평균주의 분배방식 정착 ○ 농업생산기반과 생산력 침체
1977 ~ 현재	○ 생산책임제의 인민공사체제 대 체 ○ 1982년 1號文件 ○ 1990년 「農業工作重點」 발표	○ 농가단위 경영체제의 확립 ○ 농촌의 공업화 활동 활발 ○ 시장지향적 경제활동 확산 ○ 지역간, 都·農간 불균형 성 장

- 수입 : 637.9억불

○ 총외자 도입(1991년 기준 : 178억불(대외차관 : 63.7억불,  
직접투자 : 110.6억불)

## 2) 농림수산개황

○ 국토(9억6천만ha)이용 ; 경지면적(9,620만ha,10%)  
산지면적(11,530만ha,12%)  
내수면면적(1,660만ha,1.7%)  
초지면적(31,910ha,33.2%)  
도시 및 공장면적 ( 16,430만  
ha, 6.7%)

기타토지면적(36.4%)

○ 경지면적(9,620만ha)구성 : 논(2,450만ha : 25.5%)  
밭(7,170만ha:74.5%)

- 경지관개율(1986기준) : 45.9%

- 농지이용율(1986기준) : 150%

- 농가호수 : 2억 2,200만호

- 호당경지면적(1986년기준) : 0.49ha

- 농촌인구비중(1986년기준) : 58.6%

○ 농림수산업 총생산액 구성비 변화(1980→1989);

경종업 ; 71.7→56.2%

임업 : 3.6→4.4%

축산업 ; 18.5→27.5%

부업 : 4.0→6.6%

어업 : 1.7→5.3%

○ 식량작물의 단수(1989년기준) : 363kg/10a

○ 농업생산총액(1991년기준) : 1,483억불

○ 성별농업특성<그림2 참조>

그림 2. 성별 주민 특성



표 2 한중간 주요 경제지표 비교

주요지표	중국(A)	한국(B)	비교(A/B)
○ 면적	957.7만km <sup>2</sup>	9.9	96.7배
○ 인구	114,333 <sup>2)</sup>	4,327 <sup>2)</sup>	26.4
○ G N P	3,329 <sup>1)</sup> 억\$	(2,422 <sup>2)</sup> )	1.4
- 1인당	302\$	5,659 <sup>2)</sup>	0.05
○ 무역			
- 수출	719.1 <sup>3)</sup> 억\$	695.2 <sup>3)</sup>	1.03
- 수입	637.9 <sup>3)</sup> 억\$	765.9 <sup>3)</sup>	0.8
○ 경지면적	9,620만ha	209.1	46
- 논	2,450	133.5	18.4
- 밭	7,170	75.6	94.8
○ 농지이용율	150 <sup>4)</sup> %	111 <sup>3)</sup>	1.4
○ 호당경지면적	0.49 <sup>4)</sup> ha	1.23 <sup>3)</sup>	0.4
○ 농업총생산액	1,483 <sup>3)</sup> 억\$	228 <sup>3)</sup>	6.5

주 1) 89년 기준, 2) 90년 기준, 3) 91년 기준 4) 86년 기준 자료임

#### 나. 농림수산물 생산현황

##### 1) 농업총생산액의 구성

- 1978-88년의 기간동안 농촌지역 사회총생산액은 연평균 19.9% 증가
- 동기간중 경종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10%이상감소
- 동기간중 축산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12.2%증가
- 동기간중 어업부문의 상대적 비중은 3.5배 정도 증가
- 동기간중 부업의 상대적 비중도 2배 이상 증가

##### 2) 농림수산물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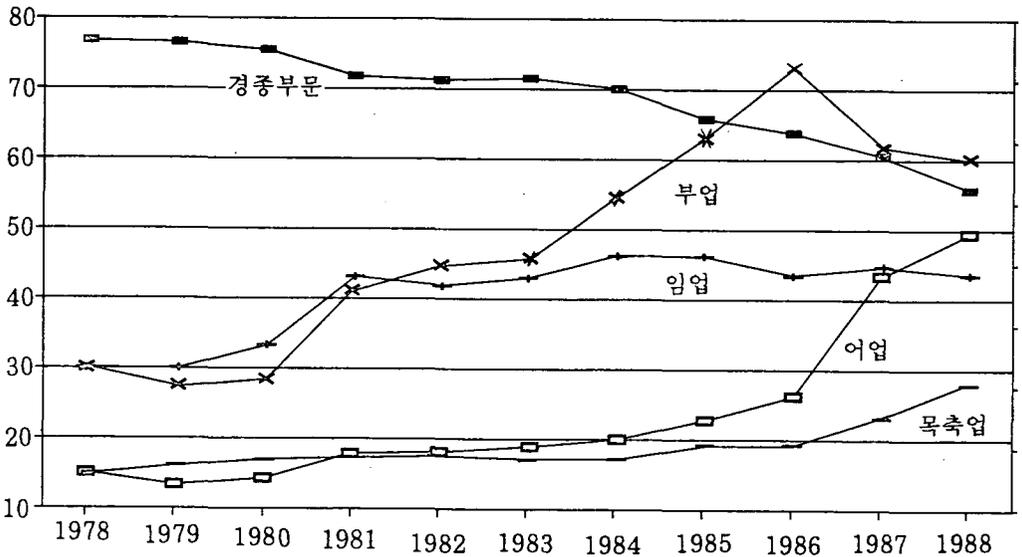
-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은 쌀, 밀, 옥수수, 콩 등의 곡물류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양념 채소류, 그리고 담

배, 돼지고기, 유채, 땅콩, 고구마, 사과, 배 등임.

표 3 농업총생산액의 구성변화

단위: %

구 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경종부문	76.7	76.4	75.0	71.7	71.0	71.3	69.9	66.2	64.6	60.7	55.9
임업	3.4	3.2	3.6	4.7	4.6	4.7	5.0	5.0	4.7	4.8	4.7
목축업	15.0	16.0	16.8	17.2	17.5	16.9	17.0	19.3	19.3	22.8	27.2
어업	1.6	1.4	1.5	1.9	1.9	2.0	2.1	2.4	2.8	4.8	5.5
부업	3.3	3.0	3.1	4.5	5.0	5.1	6.0	7.1	8.2	6.9	6.7



주 : 경종, 목축업은 왼쪽의 Y축, 임업, 어업, 부업은 오른쪽의 Y축을 따름

표 4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백만톤

	1988			1989			1990		
	세계 (A)	중국 (B)	B/A (%)	세계 (A)	중국 (B)	B/A (%)	세계 (A)	중국 (B)	B/A (%)
곡물류	1,741.9	351.8	20.2	1,881.8	368.2	19.6	1,954.7	388.8	19.9
밀	507.0	85.4	16.8	541.8	90.8	16.8	595.2	96.0	16.1
쌀	490.6	171.4	34.9	517.6	182.5	35.3	518.5	188.4	36.3
옥수수	400.3	171.4	34.9	517.6	182.5	35.3	518.5	188.4	36.3
보리	167.3	3.0	1.5	167.9	3.2	1.0	180.4	3.1	1.7
귀리	37.4	30.6	1.6	41.6	90.6	1.4	43.7	0.6	1.4
조	31.2	4.4	14.1	30.0	3.8	12.7	29.8	4.4	14.8
수수	61.9	5.7	9.2	60.0	4.5	7.5	58.2	5.3	0.9
감자	271.2	31.7	11.7	277.1	31.3	11.3	269.6	30.1	11.2
고구마	122.9	103.5	84.2	125.0	105.5	84.4	131.7	102.2	85.2
대두	93.4	11.7	12.5	106.9	10.2	9.5	107.8	11.5	10.7
참깨	2.2	0.404	18.4	2.1	0.338	16.1	2.0	0.420	21.0
고추(류)	9.3	2.0	21.5	9.3	2.0	21.5	9.1	2.1	23.0
양파	27.0	3.7	13.7	27.2	3.8	14.0	27.9	0.7	24.1
마늘	2.8	0.6	21.4	2.8	0.7	25.0	2.9	3.9	14.0
사과	42.0	4.4	10.5	41.7	4.5	10.8	40.3	4.7	11.7
담배(잎)	6.9	2.8	40.6	7.1	2.9	40.9	6.6	2.3	34.9
쇠고기	49.9	0.7	1.4	50.5	0.8	1.6	51.2	0.9	1.8
돼지고기	66.8	21.0	31.4	67.7	22.2	32.8	69.5	23.7	33.1
호밀	32.2	1.3	4.0	36.1	1.2	3.3	37.0	1.3	3.5
유채	22.0	5.0	22.7	22.4	5.4	24.1	24.5	6.9	28.2
배	6.6	0.9	13.2	6.8	0.9	13.2	5.7	0.9	15.8
땅콩	25.3	5.4	23.5	23.0	5.4	23.5	23.1	6.6	28.6
면화	5.0	0.2	4.0	4.9	0.3	6.1	5.1	0.3	5.9

자료: 「Production Yearbook」, 1990.

- 1990년 기준 중국이 세계 주요 농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구마 85.2%, 쌀 36.3%, 잎담배 34.9%, 돼지고기 33.1%, 땅콩 28.6%, 유채 28.2%, 마늘 24.1%, 고추 23.0%, 참깨 21.0% 등임(세계 제1~3위 품목)
  - 밀, 옥수수, 조, 대두 등 주요 곡물 생산도 세계 총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함
  - 1978년 개방화 조치 이후 사과, 배, 고추, 마늘, 양파 등 경제 작물의 생산 및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계속 증가 추세임.
- 사과와 감귤 생산량은 각각 중국 총과실 생산량의 25% 정도로 두 품목이 과실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축산업 또한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어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1978년 15% → 1989년 27.5%
- 특히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돼지는 사천성을 중심으로 3억 6천만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2천 4백만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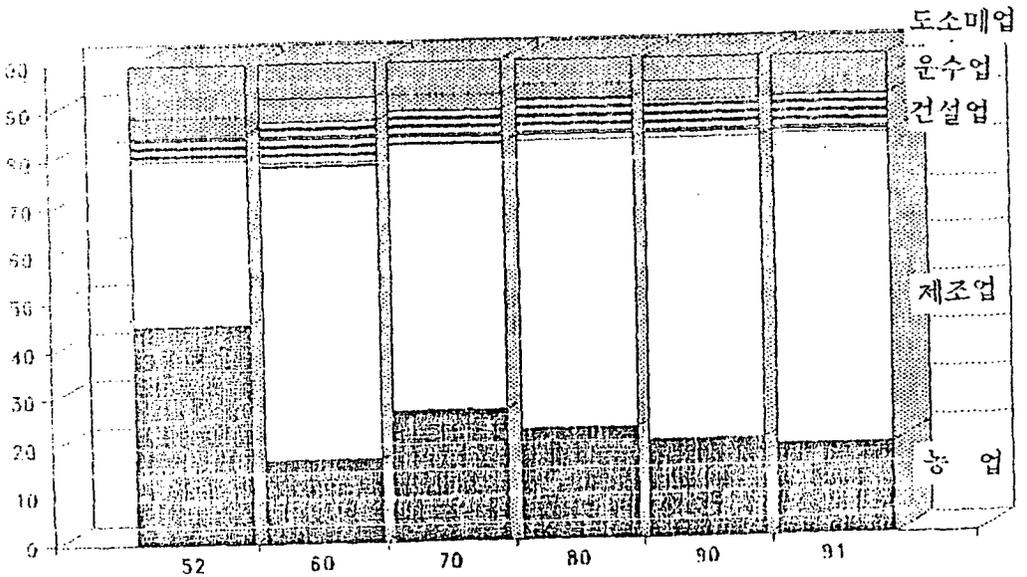
### 3) 사회총생산액의 구성

- 사회총생산액중 농업생산액은 1952년도 45.4%에서 1970년 26.9%, 1980년 22.5%까지 하락
- 1980년대 이래 책임생산제의 확립으로 농업생산이 크게 향상
  - 그 비중도 18%-20% 수준을 계속 유지
- 기본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액중 농업부문의 투자
  - 1980년 이전 : 10%-18% 수준 유지
  - 1980년 이후 : 3%-6% 수준 유지

표 5 사회총생산액의 구성

단위: 億元(경상가격)

연 도	사회총생산액	농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1952	1,015	4621	349	57	35	113
1960	2,679	457	1,637	248	131	191
1965	2,695	833	1,402	177	91	192
1970	3,800	1,021	2,117	271	117	274
1975	5,379	1,260	3,207	437	160	315
1980	8,534	1,923	5,154	767	250	440
1985	16,582	3,619	9,716	1,656	488	1,103
1989	34,519	6,535	22,017	2,834	990	2,143
1990	38,035	7,662	23,924	3,043	1,535	1,871
1991	43,584	8,157	28,225	3,545	1,665	1,992



## 제 3 장

# 중국의 교역현황 및 무역제도

### 1. 교역현황

#### 가. 중국의 교역 변화

- 1978년 이전 : 자력갱생 또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에만 치중  
1978년 이후 : 서방 선진공업국과의 교역을 강화
  - 그중에서도 일본과 홍콩을 통한 무역거래가 압도적 위치
  - 1985년 총교역규모중 일본과 홍콩의 비중은 각각 27%와 18%
  - 1990년 이들 두나라의 비중은 더욱 커져 각각 24%와 58%로 증가
  - 최근에는 미국, 대만, 한국, ASEAN국가들과의 교역이 급증
- 1991년 총교역규모 1,357억달러, 세계 10위권의 교역국으로 부상

- 최근 2년동안의 무역수지는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

○ 교역내용

- 1978년 개혁조치는 전체 수출량의 53.5%가 농림수산물 위주의 1차산품
- 1991년 농산물 위주의 1차산품은 22.5%, 공업완제품이 77.5%를 점유
- 최근의 수출주력 품목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섬유사, 직물, 의류 등 섬유제품으로서 전체 공산품 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

표 6 중국의 대외무역실적 추이

연 도	교역 총액		수 출 액		수 입 액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78	206.4	39.5	97.5	28.5	108.9	51.0	-11.4
1979	293.3	42.1	136.6	40.1	156.7	44.0	-20.2
1980	381.4	30.0	181.2	32.7	200.2	27.7	-19.9
1981	440.3	15.4	220.1	21.5	220.2	10.0	-0.1
1982	416.1	-5.5	223.2	1.4	192.9	-12.4	30.3
1983	436.2	4.8	222.3	-0.4	213.9	10.9	8.4
1984	535.5	22.8	261.4	17.6	274.1	28.1	-12.7
1985	696.0	30.0	273.5	4.6	422.5	54.1	-149.0
1986	738.5	6.1	309.4	13.1	429.0	1.6	-119.7
1987	826.5	6.1	394.4	27.5	432.2	0.7	-37.7
1988	1,027.9	24.4	475.2	20.5	551.8	27.9	-77.5
1989	1,116.8	8.6	525.4	10.5	591.4	7.0	-66.0
1990	1,154.4	3.3	620.9	18.1	533.5	-9.8	87.1
1991	1,357.0	17.5	719.1	15.0	647.9	19.8	81.2

- 중국의 경제수준이 제고되고 수출입 상품 패턴이 다양화 됨에 따라 중국의 무역상대국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전통으로 홍콩은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서 1991년도 중국 전체 교역액의 36.5%에 달하는 496억 불을 교역하였음.
  - 더우기 홍콩은 중국 수출상품의 중개항으로서 중국수출의 약 75%가 홍콩을 경유하고 있음.
  - 최근들어 중국은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과의 무역관계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은 1985년까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나 1988년 이후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190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1991년도 한·중 무역총액은 직간접 포함 약 57억불(간접교역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국의 5대 교역국에 속함.

표 7 1991년도 중국의 주요 국별 수출입 실적

순위	국·지역	수출입액		수출액		수입액	
		US억 \$	전년비(%)	US억 \$	전년비(%)	US억 \$	전년비(%)
1	홍콩	496.00	121.2	321.37	120.5	174.63	125.5
2	일본	202.79	122.1	102.51	113.7	100.28	132.1
3	미국	142.01	120.6	61.93	119.5	80.08	121.5
4	독일	54.04	108.7	23.55	186.1	30.49	193.8
5	대만	42.33	164.4	5.95	81.5	36.38	161.3
6	소련	39.04	89.2	18.23	172.9	20.81	97.3
7	한국	32.45	166.9	21.79	102.0	10.66	155.8
8	싱가포르	30.77	108.9	20.14	111.5	10.63	124.9
9	이태리	23.90	125.4	9.32	111.5	14.58	136.3
10	프랑스	23.05	99.9	7.33	113.5	15.72	94.3
11	캐나다	22.01	115.3	5.55	128.9	16.46	111.3
12	호주	21.10	116.6	5.54	121.9	15.56	114.9

주: 「중국해관통계」는 통관기준에 의한 통계로서 「중국대의경제무역연감」과 차이가 남.  
자료: 중국해관통계.

## 나.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 〈수출현황〉

- 중국의 농산물 수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는 공산품 수출비중의 증가에 기인함.

:1980년 18.7% →1989년 15.2%→1990년 13.0%

- 중국의 곡물류 수출은 개방화 조치후 경제작물로의 전환과 축산업 발전에 따른 사료곡물의 국내 수용증대에 따라 매년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수산물과 채소·과실류 수출은 매년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며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표 8 1차산품별 수출추이

단위: 억불

	1985		1989		1990		1985~90 연평균 증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차 산 품 총 계	138.28	100.0	150.78	100.0	158.86	100.0	2.8
○ 식 용 품 류	38.03	27.5	61.45	40.8	66.09	41.6	11.7
- 산 동 물	3.04	2.2	3.95	2.6	4.30	2.7	7.2
- 육류및 관련제품	4.48	3.2	6.57	4.4	7.91	5.0	12.0
- 수산물 및 관련제품	2.83	2.0	0.39	6.9	13.70	8.6	37.1
- 곡물 및 관련품	10.65	7.7	7.19	4.8	6.14	3.9	-10.4
- 야 채 및 과 실 류	8.25	6.0	16.23	10.8	17.59	11.1	16.3
- 커피, 홍차, 코코아	4.35	3.1	5.68	3.8	5.34	3.4	4.2
등 조 제 식 품							
○ 음 료 및 연 초	1.05	0.8	3.14	2.1	3.42	2.2	26.6
○ 비 식 용 연 료	26.53	19.2	42.12	27.9	35.37	22.3	5.9
○ 광 물 원 료	71.32	51.6	43.21	28.7	52.37	33.0	-6.0
○ 동 물 성 원 료	1.35	1.0	0.86	0.6	1.61	1.0	0.0

- 사료곡물의 수출은 대두박 수출증가에 힘입어 중국 농산물 수출의 최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두박은 단일품목으로 옥수수를 제치고 최대수출 품목으로 대두.
- 수수와 강남콩 등 몇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곡물 수출의 주종인 옥수수의 수출 물량 감소에 기인함.
  - 옥수수는 1990년에 2,877천M/T이 수출되어 (3억4천만불)전체 곡물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함(금액기준69.1%, 물량기준78.2%)
- 축산물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여 1987~199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7.1%로 중국 농산물 수출의 주력 품목이 되고 있음.
  - 특히 쇠고기, 닭고기의 수출증가율이 최근에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돼지고기 역시 꾸준한 증가세 유지

표 9 중국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추이, 1987~90

단위: 천M/T, 백만불

	1987		1988		1989		1990		1987~1990 연평균증가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곡물류	7,187	979	6,542	1,118	6,221	1,169	3,678	492	-20.0
축산물		335		389		422		538	17.1
과실류	239	100	308	125	237	102	232	104	-1.0
채소류	482	222	715	349	749	381	755	364	16.1
건과류	77	117	77	117	73	107	68	103	-4.1
건채류		99		99		129		180	22.1
사료곡물		666		940		782		887	10.0
수산물	179	604	275	810	267	899	307	1,119	19.7

### 〈수입현황〉

- 중국의 1차식품 수입규모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공산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증대로 높아지고 있음.  
:1985년 17.1%→1989년 25.9%→1990년 27.1%
  - 특히 광물원료 및 동식물성유지류 수입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 1987~1990년 동안 주요곡물의 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보리의 경우는 오히려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음.
  - 중국이 수입하는 농산물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밀로써 90년 18억불이 수입되어 곡물류 수입의 91%, 전체식료품의 수입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인의 식생활 패턴에 의해 식용유 수입도 상당량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두유 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팜유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의 절대적 우위에 힘입어 완구 및 섬유산업의 주원료인 면화의 수입증가는 주목할만 함(1987~1990년간 연평균 증가율 296%)

표 10 중국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1987~90

단위: 천M/T, 백만불

	1987		1988		1989		1990		연평균증감율 (%, 금액기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곡 물 류	16,278	1,597	14,789	1,511	16,403	2,560	13,564	2,000	-5.9
밀	13,341	1,275	13,910	1,359	14,703	2,200	12,325	1,820	-2.6
쌀	486	68	332	79	1,012	246	49	10	-2.6
보 리	484	46	241	23	327	51	698	107	13.0
○ 유 지 류	1,572	145	196	21	102	11	314	34	-41.5
팜 유	869	323	639	296	1,453	642	1,380	590	16.7
대 두 유	231	83	265	120	461	200	737	268	47.2
○ 기 타	346	121	154	66	390	144	245	118	-10.9
바 나 나	36	13	24	6	12	4	14	5	-27.0
설 탕	1,938	313	3,789	888	1,454	395	1,254	443	-13.5
분 유	30	17	43	16	4	13	14	28	-22.4
코코아두	29	69	13	24	12	24	12	14	-25.5
커피원두	15	36	12	17	12	23	9	18	-15.7
면 화	9	16	73	84	626	868	559	928	296.0
양 모	148		181	969	95	513	44	245	-33.3
○ 임 산 물									
목 재	7,643	600	10,114	939	5,652	515	3,809	422	-20.7
합 판	N.A	N.A	949	347	945	313	1,066	359	6.0
○ 수 산 물	N.A	104	N.A	210	N.A	182	N.A	95	-3.0
어 분	158	60	335	164	193	101	80	34	-2.3

## 2. 무역제도

### 가. 대외무역관리체계

- 1987년 국내개혁과 대외개방 조치가 실시, 대외무역 관리체계의 변화
  - 「政企分離」, 경영의 권한과 책임을 貿易公司에 이관, 경쟁력 강화
- 1988년 대외무역체계의 개선안 수립

- 대외무역 관련기구의 各分公司에 대한 경영권을 各省, 市, 自治區로 이양, 總公司와 分公司의 행정직 예속관계를 배제

나. 무역제도

○ 품목별 수출입 기업지정

- 중국정부는 1988년부터 수출입 품목을 각각 1류, 2류, 3류로 분류하여 해당 무역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음.

○ 수출입허가증 관리제도

- 수출입 허가증 관리품목을 234(1991년) 품목이며, 이들 품목을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의 교역에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교역이 가능함,

그림 3 대외무역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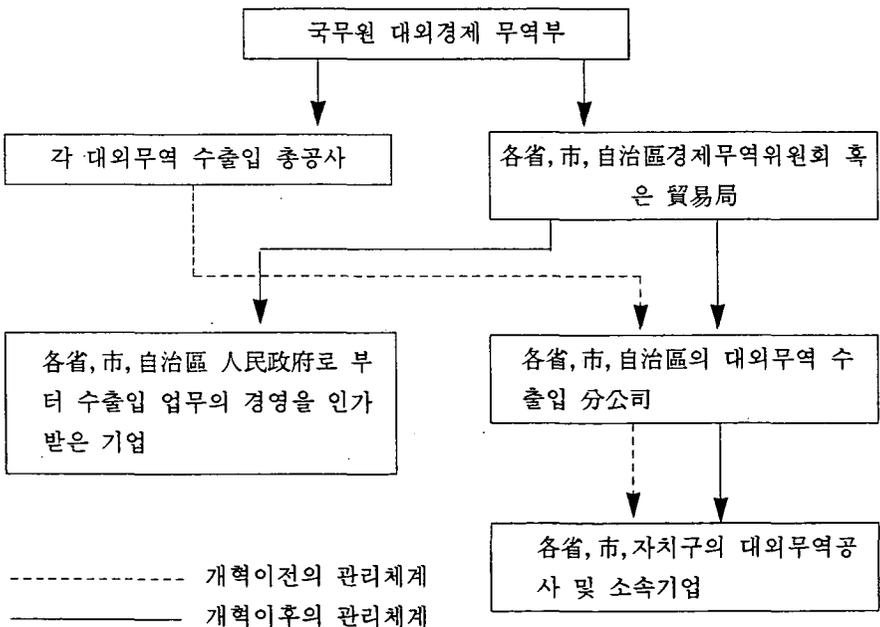


표 11 중국의 수입상품 분류

	취급기관	품 목
제1류	무역전업총공사	양곡(식용, 사료용, 공업용의 보리, 밀, 옥수수, 콩, 쌀, 녹두, 밀가루), 식용설탕(원당, 백당), 강철, 화학비료, 원유, 가공유, 고무(천연, 합성), 목재, 연초제품(잎담배, 절연, 시가), 농약, 농업용 비닐(원료), 면화, 양모, 페린렌류의 화학섬유(14종)
제2류	무역연합기업	무역연합기업(펄프, 합판, 크라프트지 및 화선지, 화공원료, TV 및 TV브라운관, 담배필터(6종)
제3류	모든무역기업	제1류 및 2류 제외한 모든 수입상품

표 12 중국의 수출상품 분류

	취급기관	품 목
제1류	무역전업총공사, 무역전업총공사와 지방무역전업공사 연합	쌀, 대두, 대두박, 옥수수, 옥수수가루, 콩찌꺼기, 콩깻묵, 차잎, 연초, 면화, 면사, 잠사류, 건축물 등 21종
제2류	무역전업총공사, 무역전업총공사의 연합	돼지, 돼지고기(냉동), 쇠고기(냉동), 토끼고기(냉동), 가금류의 육(냉동), 땅콩, 땅콩제품, 메밀, 팥, 녹두, 참깨, 버섯, 버섯통조림, 아스파라가스통조림, 삶은 죽순, 밤, 대추, 말린고사리 절인고사리, 설탕, 식염, 송진, 냉동참새우, 뱀장어 치어, 고추(건조), 호두, 호두알맹이, 원목, 목재, 양털, 동물가죽(털이 붙어 있지 않은 것), 돼지털, 돼지곱창, 돼지가죽(미가공), 산양가죽, 수달피가죽, 토끼가죽, 우모, 신삼, 녹용, 여왕벌꿀, 감초, 두충, 펄프, 갈대발, 꿀풀, 꿀풀제품 등 72종
제3류	허가된 무역기업이면 모두 가능	오동나무, 오동나무판재, 합판 등

- 중국은 이러한 양제도하에 무역기업 및 교역품목의 통제를 수급유지 및 외화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관세제도

- 중국의 관세는 일반관세와 특수관세 두가지로 분류됨.
- 일반관세는 수입억제, 관세수입, 수출증대, 경제발전 등의 기본목적 수행을 위해 시행됨.
- 특수관세는 특정품목 또는 지역(경제특구등)에 대해 시행되는 일종의 우대관세를 의미함.

## 제 4 장

### 한중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

#### 1. 한중 교역 현황

- 1987년까지 한·중교역은 홍콩등 제3국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추진되어 왔음. 근래에 1990년 하반기부터 한·중간접교역은 부분적으로 직접 교역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음. (부표 2참조)
  - 1991. 1월 주북경 한국무역대표부 개설
  - 1991. 4월 주서울 중국무역대표부 개설
  - 1992. 8. 24 한중수교
- 이에따라 양국간 교역도 1980년 1억9천불에서 1985년 12억 9천 불, 1991년 44억불로 급증하고 있음.

표 13 한중 교역추이, 1988~91

단위: 백만불

구	분	1988	1989	1990	1991
수출	전 체	1,580	1,438	585	1,003
	농림수산물	15	22	13	20
수입	전 체	1,387	1,705	2,269	3,441
	농림수산물	256	347	418	816
수지	전 체	193	△267	△1,683	△2,438
	농림수산물	△241	△325	△405	△796

주: 「무역통계연보」 상의 통계로 홍콩등 제3국을 통한 중국과의 교역액은 포함되지 않음.

## 2.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

### 가. 교역현황

- 1987, 1988년도에 고사리, 표고버섯, 나무젓가락, 당면등이 수입자유화 되면서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리적 여건 및 저렴한 곡물가격 등의 유리성으로 인해 사료용 곡물의 경우도 수입선이 전환되면서 1983년 5백만불에서 1988년 1.7억불로 급증하였고, 1991년의 경우 옥수수 단일 품목의 수입이 무려 4.4억불에 달하고 있음.
- 사료곡물 수입급증과 수량다품목 수입급증으로 대중국 수입액은 1988년 2.6억불에서 1990년 4.2억불, 1991년 8.2억불로 급증하였고 올연말까지 1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대 중국 농림수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90년 18%, '91년은 98%로 증가 매년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적자 또한 확대되고 있음.

- 1988년 2.4억불, 1990년 4억불, 1991년 8억불
-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입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수입선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7.1% (1990) → 11.8% (1991) → 15.2% (1992.5) (미국 : 40.3% → 29.7% → 25.0%)

표 14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입중 중국의 비중

단위: 백만불

국 별	1989	1990	1991	1992.5월	주 요 품 목
전 체	5,485(100)	5,789(100)	6,391(100)	3,046(100)	
미 국	2,361(43.0)	2,332(40.3)	2,055(29.7)	761(25.0)	원목, 대두, 밀, 쇠고기
중 국	347(6.3)	411(7.1)	816(11.8)	463(15.2)	옥수수, 한약재, 대두박, 참깨
말레이시아	567(10.3)	587(10.1)	694(10.0)	284(9.3)	목재, 팜유
호 주	388(7.1)	418(7.2)	485(7.0)	180(5.9)	쇠고기, 밀

-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입선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입비중은 1989년 43%에서 1991년 29.7%로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동기간중 6.3%에서 11.8%로 증가하였음.
- 특히 옥수수, 대두박, 당면의 대중국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15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비중

(단위:%)

구 분		1989	1990	1991
농 립 수 산 물	미 국	43.0	40.3	29.7
	중 국	6.3	7.2	11.8
	기 타	50.7	52.5	58.5
옥 수 수	미 국	85.3	86.2	33.8
	중 국	10.3	12.7	62.4
	기 타	4.4	1.1	3.8
당 면	대 만	39.0	16.3	7.3
	중 국	46.1	76.9	91.6
	기 타	14.9	6.8	1.1
대 두 박	미 국	-	0.01	0.2
	중 국	75.1	99.5	68.9
	기 타	24.9	0.5	30.9

- 1992년 5월까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옥수수 수입이 급증한 데 기인함.
  - 사료곡물(옥수수, 대두박 등)을 제외한 기타 수입은 소량다품목 형태로 계속 수입이 증가 추세임.
-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출은 미미하여 1991년도에 2천만불을 수출하였음(수입 : 8억2천만불)
  - 대중국 수출 농림수산물은 합판, 과자 등 가공 농산물 들임
  - 주요수출품목(1991년) : 합판(920만불), 설탕과자(70만불), 커리프럼(30만불), 냉동명태(40만불) 등

표 16 중국산 주요 농산물 수입실적

단위: 백만불

품 목	'92.5월말기준 전체수입실적(A)	대중국수입실적			대중국수입 비중(B/A)
		'91.5	'92.5(B)	증감율	
<농 축 산 물>				%	%
참깨	14.7	7.6	12.4	63.2	84.5
땅콩	3.8	12.22	3.8	△68.9	100.0
팥	1.6	2.1	1.6	△23.8	100.0
수수	3.4	0.1	3.3	3,200.0	97.1
강남콩	2.2	0.8	1.3	62.5	59.1
옥수수	318.2	142.0	251.2	76.9	78.9
건고추	8.3	0.2	7.4	3,600.0	89.2
대두박	47.2	32.9	29.92	△9.1	63.4
당면	7.7	4.4	7.3	65.9	94.8
한약재	60.1	12.7	24.7	94.6	40.8
녹용	2.2	0.4	2.9	625.0	12.0
사향	6.2	0.9	2.0	122.2	90.9
복숭아통조림	2.6	0.6	2.2	266.7	84.6
무우말랭이	6.2	3.4	5.6	64.7	90.3
메주	0.8	0.7	0.8	14.3	100.0
토끼고기	0.2	0.9	0.2	△77.8	100.0
<임 산 물>					
고사리	2.5	2.8	2.5	△10.7	100.0
표고버섯	2.7	0.4	2.4	500.05	88.9
도토리	2.2	1.21	2.1	75.0	95.4
꽃감	1.3	1.11	1.3	18.2	100.0
은행	0.8	1.4	0.8	△42.9	100.0
나무젓가락	3.7	2.5	1.9	△24.0	51.4
이썬시개	0.8	0.3	0.8	166.7	100.0
<수 산 물>					
콜뱅이통조림	0.8	0.2	0.7	250.0	87.5
조기	1.6	1.2	1.0	△16.7	62.5
참치	1.0	1.0	1.0	0.0	100.0
바지락	0.1	0.6	0.1	83.3	100.0
복어	0.1	0.1	0.1	0.0	100.0
복어	0.1	0.3			

#### 나. 해외협력 현황

- 한중수교 이전의 기술협력등을 위한 농림수산분야의 교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 농업기술분야 >

- 1986년부터 1992년 9월까지 한국측에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진 60명이 각종 학술대회, 훈련, 기술정보 및 자료수집, 시찰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다녀온 바 있으며, 중국측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51명이 한국을 다녀간 바있음.
- 이러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67개 작목 3,960개 품종의 중국산 유전자료 수집

##### < 임업기술분야 >

- 학술회의, 기술정보 및 자료수집, 공동연구 시찰등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10명, 중국에서 6명이 각각 교류방문 한바 있음.

##### < 수산기술분야 >

- 학술회의,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9명, 중국에서 10명이 각각 교환방문한 바 있음.

#### 다. 한중 농림수산물 교역의 특징

- 중국으로부터 수입단계를 특성상 2단계로 구분하면 제1단계는 중국에 관한 정보없이 제3국을 통해 간접무역으로 국내수급 사정에 따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부족한 농림수산물을 계절적으로 수입하던 단계임.
- 제2단계는 특히 1980년대말 이후 중국의 수출주도적 대외개방 정책확대와 우리의 농림수산물시장개방확대, 우리나라의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임 상승에 따른 노동집약적 농림수산물 생산 감소, 이로 인한 노동 집약적 농림수산물과 1차가공 농림수산물의 대중국수입이 급증한 시기임. 특히 제2단계는 수입업자들의 수입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수입이 행해지고 일부품목에서는 밀수까지 성행하고 있는 치근 3-4년간이 해당됨.

- 중국과의 교역품목은 크게 사료용곡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용 농산물, 수요는 존재하나 국내공급 부족으로 인한 다품종 소량 수입 농산물로 대별됨.
  - 소량 다품목은 그 종류는 다양하나 그 비중은 1억불미만 (10%)으로 낮음.
- 사료용 곡물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상에서 품질변화가 적고 필요한 때 필요한 물량을 수입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중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이 촉진되고 그에 따른 꾸준한 수입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료용 곡물은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잇점이 계속되는 한 대중국 수입은 계속 확대될 것임.
- 기상조건에 따라 국내생산이 크게 변동되어 국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해야 하는 품목들(참깨, 땅콩, 양념류, 쌀, 녹두 등)은 중국산의 품질이 우리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사료용 곡물 및 비축용 농산물을 제외한 소량다품목 농산물(HS분류상 기타로 분류되는 품목등)은 국내산과 식별이 곤란하고 높은 가격차를 보이고 있어 시세차익이 커서 민간수입업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수입을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품목은 국내산으로의 둔갑 또는 혼합으로 국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고 수입급증에 따른 농가피해, 국민건강 위해 소지, 국내수요의 한정으로 인한 소량수입만으로도 가격하락 등을 초래 중 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표 17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유형별 수입현황, 1991

단위: 백만불

유형	품목	금액	유형별 금액 및 비중		
곡물 및 사료용	옥수수	435	548.4(67.4%)		
	대두	67			
	녹두	0.9			
	면실유	27			
	아바유인박	1.0			
	채종/콜자씨유	11			
	대두수	5.6			
		1.1			
	조	0.9			
	비축산용물	참깨		12	42.2(5.2%)
콩		19			
팥		6.6			
고추		4.6			
소량다품목	미꾸라지	0.3	71.76(8.8%)		
	칩뿌리	0.1			
	표고버섯	1.4			
	고사리	1.3			
	곶감	2.0			
	골뱅이통조림	9.4			
	은행개	2.0			
	이쭈디시종	1.2			
	잔볶은치커리	0.4			
	볶은나무치켜가	0.5			
	나뭇잎	7.1			
	쪽파	3.7			
	건파	0.7			
	건오이	2.5			
	강우남말랭이	0.6			
	무생계당	2.0			
	생계당	0.8			
	매도	0.2			
	도토리	1.8			
	토끼고기	16.3			
	양송이	1.2			
	기타	유채기		1.1	151.6(18.6)
		농생육		6.6	
생육		69.5			
육		0.7			
기타(한약재, 수산물)		63.8			

## 제 5 장

# 한중 농림수산물분야 협력방안

### 1. 일반적 전망 및 문제점

#### 가. 전 망

- 중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추진으로 농림수산물 수출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와 맞물려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국내 유입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특히, 중국산 농림수산물은 지리적 근접성, 상품의 유사성 등으로 기타 수출국에 비해 한국 수출에 유리한 실정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의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최대의 수입선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 쿼타 범위내에서 중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에 따른 농림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공

급이 부족한 단순가공 농림수산물의 수입도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 국내 유통 기능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한 중국산 농산물의 부정 유통은 국내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유통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 그러나 중국은 성(省)별로 농업발전수준이 다르고 농업지대적 특성에 따른 전문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성별, 품목별, 수급상에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업과의 상호보완 관계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투자 및 협력, 농자재 수출, 가공산업의 진출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됨.
- 토지 조방적 농산물, 노동집약적 농산물, 사료 등 원료 농산물에 대한 효율적 수입관리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비절감에 기여하는 측면도 클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가공식품(캔디, 제과류), 식품가공업체(도정, 식용유, 두부, 당면 등), 농업용 자재(비료, 농기계, 농약, 종자, 설비 등), 농업기술분야와 관련된 설비산업 등의 중국진출 및 수출 증대를 통해 대중국 농림수산분야 무역수지개선 및 교류증진이 전망됨.

#### 나. 문제점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노임상승, 농업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임(HS분류표에서 기타로 분류되는 품목이 많음).
- 소량 다품목의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주로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려워 국내산으로 둔갑 도는 혼합 유통되고 있어 소

비자와 생산자 모두 피해를 주고 있고, 시세차익을 노린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수입 및 밀수입 등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입관리제도의 확립이 요망되고 있음.

- 특히, 식품위생기준의 차이 및 검사 미흡 등으로 중국산 수입 농림수산물의 식품안전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수입농산물의 안전도 유지를 위한 통관 및 검역관리 강화가 요망되고 있음.

## 2. 부문별 전망 및 대책

### 가. 곡물부문

#### 1) 현황과 전망

##### 가) 현 황

##### ① 중국의 곡물생산 및 수출동향

##### <생산동향>

표 18 곡물 생산 현황

연 도	식 량					
	쌀	소 맥	옥수수	대 두	서 류	
1980	32,056	13,991	5,521	6,260	794	2,873
1990	40,750	18,013	9,081	7,893	1,013	2,730
1991	44,624	18,933	9,823	9,682	1,100	2,783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1.

○ 중국의 곡물생산은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있음.

○ 세계곡물생산량중 중국의 생산비중(1990)

- 고구마; 85.2%, 쌀; 36.3%, 땅콩; 28.6%, 참깨; 21.0%, 옥수수; 18.4% 밀; 16.1%, 조; 14.8%, 감자; 11.2%

○ 곡류의 주산지

- 쌀; 호남성(13.0%), 사천성(11.6%), 강소성(9.0%)
- 밀; 하남성(16.7%), 산둥성(16.4%)
- 옥수수; 길림성(15.8%), 산둥성(11.5%), 흑룡강성(10.4%)
- 대두; 흑룡강성(29.6%)
- 서류; 사천성(17.3%), 산둥성(13.3%)
- 땅콩; 산둥성(33.1%), 하남성(16.6%)
- 참깨; 하남성(30.5%)

<수출동향>

- 중국의 농수산물 수출액중 곡물관련품의 수출액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1985~90년의 연평균 증가율; -10.4%

1985; 7.7%→1989; 4.8%→1990; 3.9%

- 식용곡물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사료곡물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음.

- 식용곡물; 1989; 979백만불→1990; 490백만불

- 사료곡물; 1987; 666백만불→1990; 887백만불

- 곡물류의 수입액중 밀수입액이 1990년 18억불로서 91%이며, 전체곡물수입량은 쌀의 수입량 감소추세에 의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쌀 ; 1987; 486천톤→1990; 49천톤

- 밀 ; 1987; 13,341천톤→1990; 12,335천톤

- 보리; 1987; 484천톤→1990; 698천톤

② 한국과의 교역관계

- 대중국 곡물수입은 민간교류확대 전에는 주로 수입제한 품목인 원료곡물과 유지작물 중심이었으나, 교류확대 이후부터 수입자유화품목인 곡물가공품류, 중간원료재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음.
- 대중국 곡물류 수입은 전체농수산물 수입추세에 비해 증가속도가 빠르며,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 곡물류 수입액 증가율(1991/90) ; 2.34배  
농수산물수입액 증가율(1991/90) ; 1.95배
  - 1990농수산물 수입액 중 곡물수입액 비중 ; 7.9%  
1991농수산물 수입액중 곡물수입액 비중 ; 9.5%
- 류별수입현황을 보면 1990년 대비 1991년 수입감소품목은 곡물이고 그외 건조 곡류, 채유용종자, 곡물분조제품, 곡물조제식료품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가공곡물(곡물가루), 곡물분조제품(가루반죽, 당면), 곡물조제식료품(기타가루)은 아직 수입액 비중은 크지 않으나 신장률이 매우 높음.

표 19 대중국 곡물 및 곡물가공품 류별 수입현황

단위: 천불, %

품 목	1990		1991		1991 / 1990	비 고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건 조 곡 류	2,143	6.5	12,585	16.2	5.87	팥, 녹두, 콩
곡 물 류	12,040	36.3	3,029	3.9	0.25	조, 수수, 메밀
가 공 곡 물	0	0.0	551	0.7		곡물가루, 울무
채 유 용 종 자	13,594	40.9	37,081	47.8	2.73	참깨, 땅콩, 대두분
식 물 성 유 지	2,938	8.8	4,511	5.8	1.53	피마자유
곡 물 분 조 제 품	1,011	3.0	16,665	21.5	16.5	가루반죽, 당면, 면
곡 물 조 제 식 료 품	22	0.0	367	0.5	16.7	기타가루(팽창, 볶음)
조 제, 저 장 처 리 품	295	0.9	670	0.9	2.27	콩저장처리
소 스 조 제 품	1,150	3.5	2,092	2.6	1.82	고추장, 메주, 기타

자료; 무역통계연보, 1990, 1991.

- 유형별 수입비중을 보면 1990년에는 채유용종자, 곡물류가 40.9%, 36.3%로 대종을 이루었으나, 1991년에는 채유용종자, 건조곡류, 곡물분조제품이 47.8%, 16.2%, 21.5%로 수입품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나) 전망

##### ① 우리나라의 수입개방확대품목

- 곡물류중 쌀, 보리 등 주요 양곡은 수입제한품목이며 곡물가공품의 대부분은 수입자유화품목임.
  - 1977~78년 수입자유화품목; 곡물분조제품(가루반죽, 국수, 당면), 곡물조제식품(팽창, 뽕음, 가루), 조제 저장처리품, 썬감자 등
  - 83~88년 수입자유화품목; 피마자유, 소스조제품(고추장, 메주, 장류) 등
  - 1990~91년 수입자유화품목; 강남콩, 기타콩, 밀, 수수, 조 등
  - 1992~93년 수입자유화품목; 단백질농축물(두부 등), 채유종자와 과실의 분·조분(땅콩분, 참깨분 등)
  - 1994년 수입자유화품목; 맥아, 호프
  - 1995~97년 수입자유화품목; 매니옥, 고추(고추가루), 맥아, 참깨, 참기름, 낙화생 조제품(볶은 땅콩 등) 등
  - 통합공고상 수입제한품목; 쌀, 보리, 옥수수, 메밀, 귀리, 울무, 기타곡물(기장, 피), 곡물(분쇄물, 조분, 펠레트, 기타), 감자(분, 플레이크), 고구마, 매니옥 칩, 각종전분, 당콩(탈각, 비탈각) 등

##### ② 한국의 주요곡물 생산추이

- 주요곡물의 연평균 생산증가율(1987~91)
  - 쌀 보리 등을 제외한 주요곡류의 국내생산은 감소하고 있음.

- 호밀; -55.11%, 조; -3.3%, 수수; -2.3%, 메밀; -13.2%, 콩; -2.6%, 팥; -6.7%, 특두; -8.2%, 기타콩; -18.6%, 참깨; -8.9%, 땅콩; - 13.3%, 고구마; -11.6%

○ 주요 전작물의 표준소득 비교(1989)

(10a당 순소득, 시설채소류소득 기준)

- 토지경합작목중 곡류의 순소득비중이 현저히 낮음.
- 시설채소(100.0), 과채류(30.6), 채소류(26.3), 두류(9.4)
- 콩(8.2), 팥(6.1), 녹두(8.9), 참깨(16.2), 들깨(7.0), 땅콩(12.3)

○ 주요 수입품목의 자급율(1991)

- 옥수수; 7.1%, 콩; 52.7%, 팥; 57.2%, 녹두; 63.8%, 메밀; 83.1% 참깨; 51%, 땅콩; 52%

○ 향후 수입자유화 품목은 물론 쌀, 보리를 제외한 수입제한품목도 국내생산의 지속적 감소와 이로 인한 자급율 저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곡류수요량의 안정적인 확보노력이 필요함.

③ 중국의 곡류 수출잠재력

○ 중국의 1인당 곡물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연평균증가율; 1.11%
- 1990; 213.81kg → 1985; 251.69kg → 1990; 238.80kg

○ 1989년 중국의 식량 수요구조는 쌀과 소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1980; 소맥 21.7%, 쌀 36.4%, 옥수수; 21.1%, 서류; 9.4%, 대두; 2.7%, 잡곡; 8.5%
- 1989; 소맥 25.3%, 쌀 43.0%, 옥수수; 18.2%,

서류; 6.5%, 대두; 2.2%, 잡곡; 4.8%

- 향후 2000년까지 중국의 곡물수요량은 최대 593.6백만톤으로 추정되며, 이때 곡물부족량은 최대 115.1백만톤으로 추정됨. 따라서 전체적으로 곡물수출여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표 20 중국의 곡물 수요 예측

단위: 백만톤

연 도	수 요 량		공 급 량		부 족 량	
	최 대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최 소
1995	525.1	478.2	539.3	393.5	84.7	-14.2
2000	593.6	502.9	592.9	387.8	115.1	0.7

Colin A. Cater, "China's Past and Future Role in the Grain Trad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 그러나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따라 각 성단위의 잉여농산물 수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은 농동력과 원료곡 가격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하여 곡물가공품의 수출이 크게 신장 될 것으로 전망됨.

## 2) 문제점과 대책

### 가) 문제점

- 수입제한품목은 국내생산의 불안정에 따른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용으로 수급 조절계획하에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산의 품질이 우리의 것과 유사하고 지리적 유리성으로 수급조절계획하에 안정적인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수입자유화된 각종 곡물가공품의 경우 값싼 원자재 및 노임 등에 의해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한중수교후 더욱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곡물가공품의 한국내 생산공정은 대부분 재래식 공정을 거치며, 영세 중소기업에 의해 운영됨으로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기계화, 자동화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거나 이제 막 자동화의 초입단계에 있어 값싼 중국산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음.
  - 자동화 및 규모화에는 기존의 노동력중심의 재래식공정 운영에 비해 초기연구자금이 크게 소요되나 기존의 영세업체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
- 최종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시장잠식과 더불어 중간원료재와 최초원료농산물산업에 직·간접적인 산업피해가 유발되고 있으나 각 연계산업간 협조체제구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소비자에게 원산지표기 등 상품정보가 왜곡된채 유통되고 있으나 정부 및 관련 단체의 감시기능이 미약하고 위반시 제재조치가 약함.
- 한중간 곡물교류중 아국기업의 대중국진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는 편의식품(라면 등), 곡물과자제조, 두부 등 식품제조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중국의 국민소득 증가와 이동성의 증가에 따른 식생활변화에 기인할 수 있음.

#### 나) 대책

- 수입제한품목
  - 수입제한품목은 국내생산의 불안정에 따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수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서 향후 유리한 수입선확보대책이 필요함.

- 수입제한품목의 국내 생산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격 정책 등 각종정책 지원강화.

○ 수입자유화품목

- 원료곡의 경우 대부분 국내 생산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내수요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의 일환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봄.
- 다만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의 적극적인 시장차별화를 통해 국내 농민의 자발적인 시장변화적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가공품의 경우 우선 국내 가공기술의 자동화·기계화를 추진하되 대부분 영세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기술개발을 국가 또는 조합, 공공단체에서 지원함.
- 특히, 이를 위해 관세의 일부분을 해당산업 기술개발자금으로 투자.  
기술개발기간동안 국내가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산업피해 구제조치의 적극적 활용.
- 기계화진전을 위해 가공기계수입에는 관세 및 각종세금 면제조치 시행 특히, 산업의 규모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합리화업체에 시설자금의 저리융자 또는 보조, 공해방지시설에는 국고지원을 함.
- 가공원료의 저가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규모 가공원료 공급단지의 조성 과 원료곡의 생산비인하가 가능하지 않거나 원료공급단지조성이 진행되지 못할 품목의 경우 필요가 인정될 때 저가 원료의 수입을 추진.
- 국내 가공연계산업간의 수직적통합추진 산업에 정책자금 지원.

- 국내 식품규격 정비 및 수입품과 국내산품의 유통기간 공정 엄격 적용.
- 최종소비재는 벌크수입지양, 원산지표기 강화된 소포장 수입 유도.
- 수입제한품목의 기타조제품 등의 위장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HS분류번호의 원료곡 분류번호 적용.
-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기능의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 원산지미표기 상품의 경우 취급업체의 제재 강화.

### 3) 향후연구과제

- 국내 주요곡류의 수급전망 및 수급안정대책연구
- 국산품의 시장차별화연구
- 국산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연구
- 국내 가공기술산업의 지원방안연구
- 연계산업의 수직적 통합연구
- 농안기금의 효율적 배분연구
- 가공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방안연구
- 가공산업의 자동화연구 및 지원방안연구
- 일본의 자국상품 시장차별화연구
- 일본의 수입상품 관리 및 유통정책연구
- 일본의 수급불안정품목의 수급안정정책연구
- 일본의 가공식품기술 및 공전비교연구
- 중국의 곡류 생산정책 및 수출정책연구
- 중국의 곡류가공산업의 기술현황 및 문제점, 전망연구
- 중국의 유통하부구조현황 및 유통정책연구

## 나. 축산부문

## 축 산 물

## 1) 현황과 전망

## 가) 현황

- 1990년 중국의 축산물 생산량을 보면 쇠고기 0.9백만톤, 돼지고기 23.7백만톤, 가금류고기 3.3백만톤, 밀크 4.3백만톤, 계란 7.5백만톤이었음. 돼지고기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1/3을 점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량은 세계생산량의 1/5을 점하고 있음.

표 21 중국의 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백만톤

	1988			1989			1990		
	세계 (A)	중국 (B)	B/A (%)	세계 (A)	중국 (B)	B/A (%)	세계 (A)	중국 (B)	B/A (%)
쇠 고 기	49.9	0.7	1.4	50.5	0.8	1.6	51.2	0.9	1.8
돼 지 고 기	66.8	21.0	31.4	67.7	22.2	32.8	69.5	23.7	33.1
가 금 류 고 기	37.3	3.1	8.3	38.3	3.2	8.4	39.9	3.3	8.3
밀 크	466.2	3.8	0.8	470.6	4.0	0.8	475.5	4.3	0.9
계 란	35.5	7.1	20.0	35.6	7.4	20.1	35.8	7.5	20.9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1990.

- 1990년 중국의 축산물 수출액은 생축 및 가금류는 42,974만불, 식육류는 53,760만불, 알류는 4,104만불, 돼지고기 통조림은 15,004만불, 쇠고기 통조림은 7,870만불, 가금류 통조림은 281만불, 밀크는 151만불, 분유는 149만불, 연유는 225만불이었음.

표 22 중국의 축산물 수출현황

금액단위: 만불

품 명	단위	1988		1989		1990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생축및가금류			40,645		39,321		42,974
산 돼 지	두	2,365,199	22,112	2,264,656	22,781	2,181,510	24,088
산 소	두	188,852	6,139	171,440	5,920	181,026	6,358
산 닭	만수	3,355	6,464	2,366	5,054	3,236	6,370
식 육 류			38,878		42,719		53,760
냉동돼지고기	톤	58,547	10,648	80,912	14,110	113,215	18,914
냉동쇠고기	톤	54,693	11,019	55,847	10,288	87,019	14,613
냉동가금류	톤	36,842	5,747	39,473	6,846	50,547	9,655
알 류			5,536		3,995		4,104
돼지고기통조림	톤	81,486	14,367	85,327	14,865	86,105	15,004
쇠고기통조림	톤	28,205	6,329	31,712	6,462	40,896	7,870
가금류통조림	톤	2,101	288	2,832	443	1,773	281
밀 크	톤	1,723	88	3,483	192	3,177	151
분 유	톤	1,854	446	1,408	371	755	149
연 유	톤	2,045	178	2,046	210	2,097	225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1991.

## ○ 대중국 수출현황

- 중원중축이 중국에 종돈을 수출한 것 이외에는 대중국 축산물 수출은 없음.

## ○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현황

- 중국은 구제역지역이기 때문에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은 없으나 토끼고기, 오리고기 등의 수입이 있었음. 토끼고기는 1991년 627톤(134.8만불)을 수입하였음.

나) 전망

○ 대중국 수출전망

- 중국 축산물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은 향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양돈업분야에서 종돈 수출이 전망됨.

○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전망

- 쇠고기, 돼지고기는 구제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수입할 수 없으며, 육가공제품도 현재 수입이 없고, 앞으로도 수입 가능성은 어렵다고 봄.
- 현재 닭고기는 수입되지 않고 있으나 수입개방시에 수입 가능성은 있음.

표 23 1993-1994년의 축산물 수입자유화예시 품목

구 분	1993	1994
품	쇠고기(식용 설육/혀/냉동)	소(기타)
	닭고기(미절단/신선, 냉장)	돼지고기(신선, 냉장/도체, 이분도체)
목	밀크·크림(비농축/설탕, 감미료 미첨가/지방분 .01이하)	돼지고기(신선, 냉장/넓적다리, 어깨 살뼈채절단)
	밀크·크림(비농축/설탕, 감미료 미첨가/지방분 .01초과 .06이하)	돼지고기(신선, 냉장/기타)
	밀크·크림(비농축/설탕, 감미료 미첨가/지방분 .06초과)	면양고기(어린면양/도체, 이분도체/냉동)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천연밀크조 성분합유유제품(유장이외 기타)	닭고기(절단/신선, 냉장)
	난황	돼지고기(복부살/절단/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조제·저장육(균질화 조제품)	요구르트(액상이외 기타)
		커어드( curd )

- 중국은 우유 및 유제품생산 및 소비수준이 저위에 있어 중국으로부터의 유제품수입은 어렵다고 봄.

## 2) 문제점 및 대책

### 가) 문제점

- 길림성에는 현재 150만두나 되는 한우와 비슷한 황우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구제역해제시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입찰에 참여할 경우 한우사육기반은 크게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 수입개방과 구제역해제시에 우리나라 양돈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1990년 냉동닭고기(미절단) 수출량은 960M/T이었고, 수출액은 162만불이었음(수출가격은 1,211원/g). 냉동닭고기(절단)의 수출량은 43,586M/T이었고 수출액은 8,477만불이었음(수출가격은 1,390원/kg). 이와 같은 가격은 우리나라의 1990년 가격인 2,063원/kg보다 훨씬 저렴한 것임. 그러나 현재 불황인 우리나라 육계값 750~1,000원/kg으로 인해 닭고기 수입요인은 당장 없으나, 냉장닭고기로 들여오는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가능성은 있음. 이 경우 국내 육계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임.

### 나) 대책

- 구제역 발생현황 예의 파악으로 식육개방에 대비.
- 수입개방과 구제역해제에 대비해서 한우육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방안이 필요함.
-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에 맞는 고급육질의 돈육생산 대책수립 필요.
- 양계제열화 사업활성화 지원확대 등으로 닭고기 생산비 절감방안 등 대책수립 필요.
- 외국의 돈육가공제품(덴마크, 미국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돈육가공품의 개발.

사료곡물
------

## 1) 현황 및 전망

## 가) 현황

-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세계생산량의 약 1/5 정도이며, 대두 생산량은 세계생산량의 1/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표 24 중국의 사료곡물 생산현황

단위: 백만톤

	1988			1989			1990		
	세계 (A)	중국 (B)	B/A (%)	세계 (A)	중국 (B)	B/A (%)	세계 (A)	중국 (B)	B/A (%)
옥수수	400.3	77.7	19.4	470.7	79.3	16.5	475.4	87.4	18.4
대두	93.4	11.7	12.5	106.9	10.2	9.5	107.8	11.5	10.7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1990.

- 옥수수의 경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의 주산지는 길림성, 산둥성, 하북성, 요령성 등 동북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1990년 옥수수 생산량은 87.4백만톤에 달하며, 2.9백만톤을 수출함.
- 대두는 미국, 브라질 다음의 3대 생산국으로 1990년 생산량 11.5백만톤중 0.9백만톤을 수출함.
- 1990년 옥수수는 총생산량중 3.3%를 수출하고 있고, 대두는 총생산량중 7.8%를 수출하고 있음.

표 25 중국의 사료곡물 수출현황

금액단위: 만불

품 명	단위	1988		1989		1990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옥 수 수	톤	3,521,505	35,317	3,496,714	44,457	2,887,009	33,985
대 두	톤	1,468,515	37,933	1,170,513	34,914	910,039	21,942
사 료		94,036		78,186		88,733	
대 두 박	톤	1,723,471	35,893	1,549,498	35,881	2,394,994	46,467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1991.

- 1990년 수출을 보면 옥수수는 33,985만불, 대두는 21,942만불, 사료는 88,733만불 이었음.
- 1991년에 우리나라는 중국산이 미국산보다 톤당 5~10불이 더 싸 미국보다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옥수수를 수입.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중국산 옥수수가 가격이 저렴하고 배합사료 만드는데 품질차이가 없으므로 중국산 옥수수 수입비중은 클 것임.
- 중국으로부터의 대두박 수입비중은 매우 높음.

표 26 중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입현황

	물량			금액		
	전 체	중국산	비 율	전 체	중국산	비 율
	천톤		%	천불		%
1987	3,515	184	5.2	319,007	15,966	5.0
1988	3,963	464	11.7	463,877	57,264	12.3
1989	4,614	264	5.7	636,789	37,203	5.8
1990	4,419	854	19.3	594,141	110,886	18.7
1991	4,034	3,442	85.3	500,718	424,919	84.9

자료: 농림수산부, 초지사료과.

표 27 중국으로부터의 대두박 수입현황

	물량			금액		
	전 체	중국산	비 율	전 체	중국산	비 율
	천톤		%	천불		%
1987	264	163	61.7	50,866	30,712	60.4
1988	411	380	92.5	107,875	98,757	91.5
1989	466	360	77.3	130,333	100,053	76.8
1990	441	441	100.0	91,679	91,679	100.0
1991	423	349	82.5	81,969	66,013	80.5

자료: 농림수산부, 초지사료과.

○ 대중국 수출현황

- 대중국 사료곡물 수출은 없음.

○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현황

- 1991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옥수수량은 3,442천톤 (424,919천불), 대두박 349천톤(66,013천불)이었음.

나) 전 망

○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전망

- 옥수수, 대두박은 미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계속 수입될 전망이다.

2) 문제점 및 대책

가) 문제점

○ 옥수수, 대두박 등 비교적 저렴한 사료곡물용의 국내도입으로 국내사료업체의 원가절감에 기여할 것임. 따라서 국내 축산물생산비도 절감될 것임. 그러나 국내옥수수 및 대두생산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따른 농가소득감소 예상.

○ 옥수수의 수입선이 가격요인으로 인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있으나 지나친 중국의존도는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보임. 왜냐하면 옥수수는 거의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에 중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중요함. 따라서 지나치게 대중국의존도는 안정성측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옥수수의 중국 수입 비중 추이

5.7%(1990)→80.7(1991) → 97.8(1992.1~4)

#### 나) 대책

- 국내옥수수 및 대두생산농가의 농가소득 감소예상에 대비하여 대체작목의 개발 및 보상대책필요. 대체작목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시장확보 방안강구.
- 사료협회와 축협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 합작 또는 단독투자에 의해 대단위 옥수수 및 대두생산단지 개발가능성 검토. 이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 필요한 국산 농기자재 투입
-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나친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향후 검토과제

- 중국의 축산업 및 무역에 대한 연구
  - 축산업개황(지역별 또는 성별)
  - 축산정책
  - 축산물 생산현황 및 수출입현황과 전망
  - 사료곡물 생산현황 및 수출입현황과 전망
  - 축산물 가공품 생산현황 및 수출입현황과 전망
  - 구제역 등 질병발생현황 및 해제가능성 검토
  - 축산물 유통제도 및 유통현황
  - 축산기자재 수급현황 및 정책
  - 축산생산 및 가공기술수준

## 다. 과실 및 채소부문

과	수
---	---

### 1) 현황 및 전망

#### 가) 현황

##### ① 신선과실

- 1991년 중국의 총과실 생산량은 2,176만톤(한국의 12.6배: 1990→10.6배)으로 전년대비 16.1%(1990년 흉작)의 생산성 증대를 시현하고 있음.
- 과종별 생산현황을 보면 총과실 생산량은 감귤 633만톤(한국의 11.4배)으로 29.1%, 사과 454만톤(한국의 8.4배) 20.9%, 배 250만톤(한국의 15.1배) 11.5%, 바나나 198만톤으로 9.1%, 포도 92만톤(한국의 6.2배) 4.2%의 순임.
- 1955~91년간의 연평균 증감률에서 보면 총생산량은 6.1%인데 사과와 감귤이 9.0%, 포도 7.7%, 배 5.2%의 증감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바나나는 10.6%(1965~91)로 증가하였음.

표 28 중국의 과실 생산 현황

단위: 만톤

구 분	총생산량	사 과	배	감 귤	포 도	바나나
1955	255.0	23.0	40.9	28.4	6.4	-
1960	397.7	29.6	58.7	31.1	10.3	-
1965	323.9	31.8	51.1	25.4	10.0	14.5
1970	374.5	79.8	65.4	24.2	8.5	16.6
1975	538.1	158.3	108.7	33.6	12.3	16.5
1980	679.3	236.3	146.6	71.3	11.0	6.1
1985	1,163.9	361.4	213.7	180.8	36.1	63.1
1986	1,347.7	333.7	234.8	254.8	44.2	125.1
1987	1,667.9	426.4	248.9	322.4	64.1	202.9
1988	1,666.1	434.4	272.1	256.0	79.2	183.0
1989	1,831.9	449.9	256.5	456.1	87.4	140.4
1990	1,874.4	431.9	235.3	485.5	85.9	145.6
1991	2,176.1	454.0	249.8	633.3	91.6	198.1
(비중)	(100.0)	(20.9)	(11.5)	(29.1)	(4.2)	(9.1)
연평균증 가율(%) (1955~91)	6.1	9.0	5.2	9.0	7.7	10.6*

\* 1965~91년 증가율임.

자료: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회, 「중국농업연감」, 1991.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 적요」, 1992.

- 이들 주요 과실생산외에 복숭아, 자두, 감, 유자, 살구, 오얏, 여지, 파인애플 등 온대과실에서 열대과실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매년 식부면적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의 과실 생산지역을 보면 사과와 배는 산동성과 하북성,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연강우량이 500~1,000mm 이내의 지역에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감귤과 바나나는 연간강우량이 1,000

표 29 지역(성·시)별 과실 생산 현황, 1990

단위: 천톤

지 구	총생산량	사 과	배	감 굴	포 도	바나나
전 국	18,744	4,319	4,855	2,353	859	1,456
북 경	264	74	-	59	13	-
천 진	101	31	-	12	17	-
하 북	1,755	468	-	763	81	-
산 서	406	146	-	63	15	-
내몽고	69	23	-	13	6	-
요 녕	1,113	759	-	167	74	-
길 림	133	11	-	55	21	-
흑룡강	49	23	-	11	3	-
상 해	94	-	26	11	16	-
강 소	493	106	31	150	24	-
절 강	1,070	1	797	28	22	-
안 휘	270	58	7	117	16	-
북 건	758	77	407	13	3	137
강 서	233	-	176	16	1	-
산 동	2,463	1,432	-	315	139	-
하 남	639	358	1	37	31	-
호 북	269	12	131	60	3	-
호 남	566	-	466	21	4	-
광 동	3,286	-	1,514	13	-	1,054
광 서	916	-	341	22	-	166
해 남	153	-	4	-	-	52
사 천	1,271	63	902	106	-	-
귀 주	167	4	22	36	3	8
운 남	320	31	19	98	5	39
서 장	5	4	-	-	-	-
삼 서	620	349	9	21	20	-
감 속	385	175	1	63	7	-
청 해	22	14	-	6	1	-
영 하	55	35	-	5	3	-
신 강	799	141	-	71	331	-

자료: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회, 「중국농업연감」, 1991.

~2,000mm 이내인 남부 동북계절풍 지대에 밀집되어 있고, 포도는 서북구인 약간의 건조지구에 주산지나 형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대부분 중국의 과수생산 분포는 해안선과 가까운 교통이 나름대로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임.

- 생과의 수출현황은 1990년 2,321만톤 수출에 1억 392만달러(한국의 3.8배)를 가득하였음. 품목별로는 감귤 6만 3,559톤(27.4%)에 2,947만달러(28.4%), 사과 6만 967톤(26.3%)에 2,683만달러(25.8%), 배 5만 2,687톤(22.7%)에 2,208만달러(21.2%)의 수출실적을 보유하면서 이들 3개 생과가 총 생과 수출물량의 76.4%, 금액의 75.4%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실적을 수출금액으로 한국과 비교하여 보면 감귤 169.4배, 사과 1.3배, 배 3.2배임.
- 특히, 한국과 중국의 1990년의 주요 생과의 생산량중에서의 수출비중을 보면 사과(한국 3.5%, 중국 1.4%), 배(한국 4.2%, 중국 2.3%), 포도(중국 0.6%), 감귤(한국 0.4%, 중국 1.3%)의 순으로 수출되고 있음.

## ② 건조 및 가공과실

- 건조 및 가공과실의 생산량은 알수 없으나 다양한 품목(30개 품목이상)이 건조 및 가공되어 다변화 된 수출시장에 수출되고 있는데, 1990년의 경우 총 수출실적은 2억 4천만달러로 건조과실 1억 682만달러(44.5%), 건조 및 그 조제품 6,318만달러(26.3%), 과신통조림 7천만달러(29.2%)로 생과수출을 상회하고 있음. 그러나 생과의 내수확대로 건조 및 통조림류도 수출규모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임.

## ○ 한중간의 교역현황

- 한국과실의 대중국 수출은 없음.
- 한국이 대중국으로부터의 과실 수입은 1991년의 경우 신선과실(바나나), 건조제품(곶감), 통조림(복숭아, 파인애플)등이 약 500만달러 정도 수입되고 있으며, 이외에 소규모의 설탕조제품과실 등이 약간 수입되고 있음. 바나나는 타국산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으며, 나머지 과실 조제품은 수입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나) 전망

- 중국의 과수산업은 단수가 낮고, 품질이 열악하며,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생산과 수송능력이 취약하여 고품질 생산 및 수출의 대폭적인 증대는 장기간이 요구 될 것임.
- 중국의 과실재배 면적은 매년 확대되어 대폭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1983년: 2,015千ha→ 9,490千톤
1990년: 5,179千ha→ 18,744千톤
연평균증가율: (14.4%) (10.2%)

- 중국의 과수산업은 과종별 주산지가 편중되어 있고 도로 및 운송수단이 낙후되어 있어 국내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증대에 노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으로 과실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과거에 비하여 수출규모가 보합세 내지는 축소될 것으로 보임.
- 경제의 개방화 정책에 의한 외국인 체재요원과 관광수입을 위한 외국인관광객 유치 증가로 고급과실 수요가 증가할 것임. 그러나 자국산 과실의 저질로 외국산 고급과일로 대체할 것으로 보임(예: 일본의 후지(부사)를 호텔등 고

급업소용으로 수입하고 있음 ⇒ 현지조사 확인)

- 건조과실은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겠으나 과실통조림은 가공기술이 낙후되어 대폭적인 수출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의 사과수는 자연방치 상태로 수확만 하는 재배법이었으나 약 4년전부터 전정을 하기 시작함. 그러나 미과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여기에 재배기술이 도입되면 생산량의 증가추세는 급등할 수도 있을 것임.
- 광동성의 경우 전국 최고의 감귤 생산지역이며, 사과생산은 없었으나 최근에 후지등의 신품종 유묘목이 최근에 광활하게 식재되고 있는데, 이는 내수확대 충족 및 지속적인 수출증대 대책으로 보임.

## 2) 문제점 및 대책

### 가) 문제점

- 중국의 과수산업은 과원의 신규조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현재는 단수가 낮지만 향후 새로운 재배기술이 도입되면 엄청난 생산성 증대와 품질제고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로 저가 수출가능성이 있고, 수출시장에서 수출경합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외국인 기업체 주재사원과 선진국 관광객들의 고급과실 수요를 외국산 과실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자본가들의 고급과실 수요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생과와 건조 및 가공품을 다변화된 시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출촉진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상품을 고급화로 유도하면서 지리적 인접성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과실시장 개방을 주시하게 될 것임.

- 대만과의 국교단교로 우리의 최대과실 수출시장이 미진한 상태에 있음. 중국이 대만과의 3불정책 폐지와 무역자유화를 선포함으로써 향후 질적개선을 통한 중국과실이 대만시장을 잠식할 염려가 있음.
- 중국의 수출상품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아 수입시 국민 건강차원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음.

#### 나) 대책

- 국내과원의 신규조성을 확대하고, 다수확 신품종을 육성 보급하며, 노령목의 갱신을 통하여 단수를 제고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
- 국내과실의 개방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중국의 과실보다 품질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여 신선과실의 수입을 방지해야 할 것임. 그러나 미숙과등 가공용 과실은 저렴한 가격으로 반입될 가능성이 큼.
- 한국산 생산비를 절감하며 고급과실을 생산하여 대중국 고급과실 수요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정부차원 또는 민간차원에서).
-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조속히 수출을 재개하고 현재의 편중된 과실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됨.
- 중국의 수출현황을 사전조사하여 우수한 상품외에는 반입을 불허하고, 통관품목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병해충, 잔류농약, 방부제 등의 사용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국민건강의 위해 여부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 3) 향후 연구과제

- 전반적인 과수산업의 현황파악
  - 품목별 생산에서 출하, 유통, 수출까지의 구체적인 파악

- 중국의 지역특성상 수송거리등 운반이 힘들어 균형분배가 어려울 것임. 따라서 주산지의 수출증대는 지속될 것임.
- 지역별, 품목별, 생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의 대응책 강구가 필요.
- 예) 광둥성의 감귤생산과 수출잠재력에 관한 연구 등

채 소
-----

## 1) 현황 및 전망

## 가) 현황

## ① 신선채소

- 1990년 중국의 총 식부면적은 7,059천ha로 엽채류가 6,338.3ha(한국의 118.9배)로 89.8%, 과채류가 720.5천ha(우리나라의 20.3배)로 10.2%에서 1억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는데, 주요 품목생산량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배추 817만톤(2.5배), 고추 207만톤(15.9배), 마늘 66만톤(1.6배), 양파 393만톤(9.6배), 당근 275만톤(31.6배), 오이 407만톤(56.5배), 토마토 560만톤(400배), 참외 250만톤(36.2배), 수박 620만톤(13.9배), 호박 157만톤(36.5배)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순무, 생강, 토란, 연뿌리, 양배추, 완두, 아스파라가스 등 다양한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매년 식부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 중국의 채소재배는 전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엽채류는 사천성, 광둥성, 하남성의 순으로 재배되며, 과채류는 안휘성, 하남성, 산둥성 등의 순으로 재배되고 있음.

- 1990년 전국에 국무원 승인하에 5군데의 집단 채소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집중 생산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규모의 수경재배 시설도 갖추고 있음.
- 신선채소 수출현황은 1990년 75만 4,600톤이 수출되어 3억 6,400만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였는데, 다변화된 수출시장을 통하여 주로 마늘, 양파, 감자, 순무, 생강, 토란, 연뿌리, 배추, 양배추, 토마토, 오이, 완두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수입되지 않고 있음).

## ② 건조 및 가공채소

- 건조 및 가공채소의 생산량은 알 수 없으나 다양한 품목이(20개이상) 수출되고 있는데, 1990년의 경우 5억달러 이상을 수출하였는데, 건조제조품 채소가 1억 8천만달러, 채소 통조림이 3억 2천만달러 임(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추, 마늘, 양파, 건조파, 무말랭이, 건당근, 건호박, 오이절임 등이 수입되고 있음).

## 나) 전망

- 1인당 채소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내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수출규모와 수출시장은 계속 유지 및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화에 노력할 것으로 보임.
- 신선채소와 건조 및 가공채소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쟁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여 수출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우리나라에 건조품이 들어오고 있지만 국내반입

후 유통체계확립이 되지 않을 경우 위장등의 문제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1991년 대중국 채소수입동향을 보면 일시저장채소가 15만 1,516톤에 1억 1,817만달러, 냉동야채 4만 6,467톤에 4,987만달러를 수입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수입개방시 이들 품목들의 수입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 문제점 및 대책

### 가) 문제점

- 중국의 채소산업은 매년 식부면적을 확대하면서 대폭적인 생산증대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를 수출로 연계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민기호에 따라 우리나라와 채소종류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장래에 수입개방시 저렴한 중국산 채소는 우리의 채소생산기반을 위협해 올 것임.
- 현재 신선채소와 건조 및 채소통조림 등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원료산품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의 수입개방시 지리적 이점과 가격경쟁력을 이용하여 급속도로 반입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채소수출은 1990년 75만 4,644만톤을 수출하여 3억 6천만달러의 외화를 가득하였는데,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에 1억 6천만달러로 총 수출의 44.1%, 홍콩 1억 3,500만달러로 37.1%로 이들 두 시장에 81.2%가 집중 수출되고 있는 등 전세계의 35개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국내노동력 부족, 고령화, 혹은 기상재해로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경우 우리의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집중공략이 예상되며,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임.

#### 나) 대책

- 늦어도 1997년까지는 개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채소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 국내 채소재배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신품종 육성 보급을 통하여 고급화하여 저렴한 중국산과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함.
- 신선채소는 반입되고 있지 않지만, 건조채소(무말랭이, 건호박, 토란대, 건당근, 건고구마 줄기 등)는 수입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향후 수입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들 상품은 국내 생산이 어려울 것이므로 수입제도의 강화와 국내유통단계의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채소는 내수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과거의 생산책임제를 탈피하여 생산체제를 자유화함으로써 향후 생산량이 대폭증가하여 이는 수출증대로 연계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도 고품질 채소(신선 및 가공)를 생산하여 수출로 유도해야 할 것임(일본업자가 중국에서 생산부터 출하까지 지도하여 일본자체 부족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원래는 국내 수급균형시 수입 불가능).
- 중국에 대한 기술지원(종자 및 재배기술 등)을 통하여, 중국 내수용 및 제3국 수출, 국내 흉작시 반입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장기적으로 쇠퇴 할 수 밖에 없는 채소작목은 정책적

으로 유도하여 타작목으로 대체케 함.

- 새로운 종자개발 및 가공채소의 신제품개발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통하여 내수용과 수출상품으로 개발
- 채소류(현재는 건조 및 조제채소)의 수입시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철저한 검역.
- 국산품을 먼저 완벽한 포장으로 유도하고 중국산 수입품도 완전한 포장(원산지 표시, 재료 및 함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제품을 수입케 하여 소비자가 국산과 수입품을 구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 향후 연구과제

- 중국의 채소류 수급현황과 수출잠재력에 관한 연구
  - 신선채소의 종류 및 재배기술 수준
  - 지역별, 품목별 생산현황
  -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수준
  - 유통체계와 가격형성
  - 분배구조(省別)
  - 수출입제도
  - 수출물량 수집현황(계약재배, 할당제 등)
  - 수출시장 구조
  - 생산 및 수출관장기구

라. 특작부문

1) 양잠

가) 한국 및 중국의 양잠 생산 및 교역 실태

○ 양잠은 궁극적으로 스카프, 넥타이 등의 絹製品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중간생산물인 누에고치, 生絲, 絹絲, 그리고 絹織物 등의 형태로 거래되기도 하는데, 흔히 일차 생산품인 누에고치 생산량을 기준으로 양잠업의 규모를 파악함.

- 누에고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소련·인도가 대부분의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밖에 일본·브라질·태국·북한 및 우리 나라가 주요한 누에고치 생산국임.

○ 우리 나라의 경우 1976년을 기점으로 상전면적과 누에고치 및 생사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여 1989년의 桑田面積 14.4천ha, 누에고치 및 생사 생산량 5.6 및 1.0천톤은 1991년에는 각기 11.3천ha, 3.9 및 0.7천톤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상전면적, 누에고치 및 생사 생산량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절강성·광둥성·산둥성 및 사천성 등지에서 주로 생산됨.

- 특히 절강성 및 광둥성은 공업이 발달하여 누에고치를

표 30 우리 나라 및 중국의 양잠업 실태

	한 국			중 국		
	1989	1990	1991	1989	1990	1991
재배면적(천ha)	14.4	13.3	11.3	780	890	925
생산량(천톤)						
누에고치	5.6	4.6	3.9	434	478	490
생사	1.0	0.8	0.7	37.2	40.8	41.8

생사 또는 견연사로 1차 가공한 후에 수출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주로 생사를 생산하고, 누에고치는 산동성 및 사천성에서 생산되고 있음.

- 한국의 양잠업은 대부분의 원료 누에고치 또는 생사를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하여 견직물 또는 견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으로 성격지워지는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값싼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항임.
- 양잠에 관련된 우리 나라의 수출입 제도를 보면 누에고치와 생사는 수입제한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출입공고와 검사과정을 통해 수입을 조절하고 있음.
  - 누에고치와 생사는 수출입공고에 의해 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에 한해서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추천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內需用으로는 1988년 및 1989년의 국내원료의 공급부족으로 일시 수입한 적이 있음.
  - 견연사의 경우 견직물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수출용 원자재로 상공부 산하의 섬유직물수출협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서 수입이 가능함.
  - 생사의 교역은 국제견업협회(ISA) 협약에 의한 생사검사품에 한하여 국가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최근 중국도 ISA 공인검사방법을 따름으로써 검사를 통해 수입 조정은 어려운 실정임.
- 누에고치의 세계시장 동향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련이나 인도를 제외한 중국 등 4~5개 나라에서 수출하는데 비해 누에고치를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의 2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음.
  - 한국은 현재 중국과 브라질로 부터 누에고치와 생사를

표 31 우리나라의 누에고치 및 생사 수입실태

	1989		1990		1991	
	전 체	중 국	전 체	중 국	전 체	중 국
누에고치 물량(톤)	987	546(55)	680	439(65)	783	383(49)
금액(천불)	14,955	10,180(68)	12,055	8,543(71)	11,548	6,605(57)
생 사 물량(톤)	2,364	1,985(84)	2,144	1,768(82)	2,303	1,685(73)
금액(천불)	128,142	107,638(84)	99,505	82,296(83)	96,545	70,972(74)

\* ( ) 내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도입하고 있는데 國産보다 다소 품질이 떨어진다고 함.

- 우리나라는 1962~63년 약 4,000톤의 生絲를 수출한 이래 1976년에는 41,700톤을 수출하여 단일 농산품으로는 최고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나 (1)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 (2) 세계적인 景氣 침체에 따른 수요감퇴, 그리고 (3) 제 사업체나 견직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누에고치 수매 가격 인상의 한계 등으로 양잠업이 크게 위축되어 최근에는 생사 수출이 거의 중단된 실정임.

나) 한중 수교가 양잠부문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 누에고치와 生絲는 한국의 필요에 의해 이미 오래 전부터 수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중 수교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수입개방계획에 의하면 1992년 옥사(쌍누에고치에서 생산된 저급 생사)가 수입 자유화되고, 1993년에는 생사의 일종인 저급 백잠사를, 그리고 1994년에는 누에고치와 고급 백잠사, 그리고 견연사를 수입 자유화 할 것으로 예시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누에고치 및 생사의 수입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수입 수요량은 결국 국내의 제사업이나 견직업의 수출 및 내수경기에 좌우될 것임.
- 우리나라 견직업계의 실태를 보면 製絲工場의 경우 전성기의 56개소에서 현재 24개에 불과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인 양잠업과 제사업은 이미 사양화되고 있음.
- 견직물 제조업체는 약 150여개가 있는데, 수출 참여업체는 60여개소이며, 絹絲는 일본에 키타 베이스로 일부 수출하고, 나머지는 견직물 혹은 견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日本 지역에 수출하는 것에 한하여 고급품인 국산 생사를 20% 의무적으로 혼합하여 제조하고, 나머지 지역에 수출하는 견직물은 전량 수입원료(누에고치나 생사)를 이용함.
- 현재의 수입 누에고치나 생사는 전량 외화 획득용이므로 한중 수교로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나 일본·홍콩 등을 통해 우회 수입되는 양(1991년 전체 수입의 약 8%)이 수교를 계기로 직접 수입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 및 임금격차 등으로 말미암아 누에고치나 생사의 생산은 상당 부분 중국에 넘겨 주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이 누에고치와 생사의 세계 전체 교역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수출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가격과 물량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됨.

표 32 누에고치 및 생사의 가격경쟁력 비교

	국내가격 (A)	중국산(CIF가격) (B)	B/A
누에고치	77,706원/kg	3,925원/kg	50.9
생사	54,980원/kg	28,260원/kg	51.4

- 중국은 1987~88년 기간에 kg당 누에고치 24\$, 생사 58\$로 수출하였으나 세계적인 수요 감퇴와 중남미의 국제시장 참여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자 1991년 12월에는 kg당 누에고치 15\$, 생사 29~30\$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였음.
  - 뿐만 아니라 중국은 양잠지역이 넓고 생산품의 품질이 산지와 제사업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저급품이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공, 수출되는 견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다) 한중 수교에 따른 양잠부문 대책방안
-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산업의 하나인 견직물 및 견제품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누에고치나 생사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료의 수급물량을 정확히 추정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산지별로 민간차원의 조사단을 파견하여 수입선을 확보해야 함.
  - 1992년 10월 말경에 한국의 생사수출조합 및 제사업체 대표가 중국의 양잠 주산단지인 절강성·광둥성·산둥성 및 사천성을 견학할 계획으로 있음.
  - 한국의 대한잠사회와 한국생사수출조합 등과 중국이 한국에 개설을 서두르고 있는 “사주공사” 등과의 민간교류를 확대.
  - 새로운 양잠품종이나 사양기술, 그리고 성력화 기계의 도입 등으로 누에고치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산 누에고치 및 생사 생산의 경쟁력 제고.
  - 비록 국내 양잠업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하나
    - (1) 중국산에 비해 국산 생사가 품질이 좋다는 점, (2) 상전조성과 기자재 구입 등 양잠기반의 조성에 상당기간

과 많은 고정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한 농가는 쉽게 생산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3) 유희화되고 있는 한계농지가 많이 있다는 점 등이 우리나라에서 양잠부문이 유지, 발전될 수도 있는 여건임.

- 일본에서 개발한 야채나 과일 등을 이용한 인공사료육을 확대하고, 이들 사료를 먹는 광식성 누에 품종 개발.
  - 어린 누에의 공동사육과 같은 성력 양잠기술 및 기계화 촉진으로 현재의 누에고치 kg당 생산에 소요되는 4시간의 노동력을 약 2시간으로 절감.
  - 현재 8개 업체에 의해 남미나 동남아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투자(약 7,000천불규모)를 중국으로 유도하여 현지에 뿔밭을 조성하고 제사업체를 설립함으로써 누에고치, 생사의 안정적인 확보와 잠종, 양잠 기자재 등 잠사류의 수출 촉진.
    - 현재 이란 태국 등에 1백만불 정도의 잠종을 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터키 등지에 민간업체들이 양잠 기자재를 수출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중국과 잠종, 뿔나무 품종의 상호교환과 양잠 및 제사 기술 등에 있어서 기술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중국은 한국의 염색 등 고급기술의 습득을 갈망하고 있음.
- 라) 앞으로의 연구과제
- 견직물 및 견제품의 국내외 시장 전망과 원료 확보 방안 파악.
    - 누에고치 및 생사 수요량 추정.
    - 중국산 원료 의존도와 전망.
  - 국내 양잠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
    - 누에고치 및 생사 생산비의 국제 비교.

- 양잠산업의 기술 수준.
- 잠종, 묘상, 양잠 기자재의 수출 가능성 검토.
- 양잠 관련산업의 육성방안.
  - 기존 양잠정책의 타당성 검토.
  - 양잠산업(양잠, 제사, 견사, 견직 및 견제품)의 경제성 분석.
  - 세계적인 상품으로 한국의 Silk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조성.

## 2) 한약재

### 가) 한국 및 중국의 한약재 생산 및 교역 실태

-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生藥으로서 한약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한약재 생산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한약재는 워낙 그 종류가 많고 품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나 생산에 관한 자료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략 한국 및 중국의 한약재 생산실태는 <표 33>과 같음.
- 한약재의 수입제도를 보면 한약재의 종류에 따라서 수입 금지 품목과 쿼타제 적용 품목, 수출입공고상 자동승인 품목 등으로 다양한데, 주요 한약재 70여개 품목은 약사법에 의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수입제한 품목은 보건사회부가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표 33 한국 및 중국의 약용작물 생산 실태

	한 국			중 국		
	1989	1990	1991	1989	1990	1991
재배면적 (ha)	8,151	9,179	9,463	-	-	333,000
생산액 (천불)	19,962	22,822	25,646	-	-	1,000,000

수입 한도량을 정하며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수입을 추천함.

- HS분류에 의하면 한약재는 크게 동물성 한약재(0507 및 0510)와 식물성 한약재(1211, 1302, 2106)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종류가 많고 품질이 다양.
  - 0507: 녹용, 전지, 녹각, 귀갑, 천산갑 등
  - 0510: 용연향, 해리향, 사향, 우황, 췌장, 담즙, 기타 해구신, 백강장, 복령 등
  - 1211: 감초, 인삼(수삼, 백삼, 홍삼 및 그 1차 가공품), 부자, 황련, 원지, 폐모, 두충과 기타(사인, 산조인, 사군자, 용안육, 산사자, 연자육, 박하), 치자, 고삼, 구기엽, 오미자, 대황, 만형자, 목과, 방풍, 백출, 대광정, 세신, 시호, 오가피, 자소엽, 차전자, 택사, 후박, 백작약, 사삼(더덕),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의이인, 지황, 창출, 패모, 황백, 향부자, 복분자, 고분, 구기자, 낭탕근, 맥문동, 독활, 목활피, 반하, 백지, 백하수오, 산약, 시엽, 천궁, 용담, 음양곽, 애엽, 지모, 천마, 황금, 황정, 현삼, 산수유, 적작약, 형개, 산초 등 64 품목
  - 1302: 아편, 감초, 제충국, 인삼 등의 액즙과 액기스
  - 2106: 인삼제품류
- 1991년 우리나라는 약 36,157천불의 한약재를 수입하였는데, 그 중 약 75%인 27,118천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음.
  -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한약재는 감초(4,047천불), 사향(4,231천불), 계피(1,776천불) 등 임.
- 영지버섯은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상 자동승인품목이며 검역상의 제한도 없으나 한약재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입

표 34 한국의 한약재 교역 실태

	1989		1990		1991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수 입	(M/T)	(천\$)	(M/T)	(천\$)	(M/T)	(천\$)
전 체(A)	7,332	15,335	10,320	17,958	14,894	36,157
중 국(B)	3,744	7,380	7,059	10,416	11,319	27,118
B/A	51	48	68	58	76	75
수 출						
전 체(A)	2,914	19,891	3,468	19,161	5,789	18,560
중 국(B)	-	-	-	-	21	87
B/A	-	-	-	-	0.4	0.5

한약재 품질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영지버섯은 1989년 43.5톤(295천톤), 1990년 52.5톤(293천불), 1991년 184.7톤(919천불)을 수입하였는데 그 중 중국산의 비중은 1989년의 86%에서 1991년에는 97%로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나) 한중 수교가 한약재 부문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 한약재의 수입은 수교 전부터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중 수교를 계기로 특별한 수입 증가는 기대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한약재의 수요량에 비해 국내 생산(공급)이 부족하고 중국산 한약재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은 (1) 밀반입과 불법유출에 의한 국내 시장교란의 위험이 있고, (2) 품질이 불량한 한약재의 수입으로 국민건강상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3) 저가의 한약재 도입으로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이 무너짐으로써 약용식물 재배농가의 소득원을 박탈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큼.

표 35 한국과 중국의 주요 한약재 가격비교

		국내가격 (A)	중국산CIF가격 (B)	A/B
반	하	25,000	3,571	700
백	출	10,600	2,133	497
복	령	14,200	2,528	562
음	양	6,660	1,106	602
창	출	4,500	1,225	367
당	귀	25,900	5,768	449
감	초	6,670	1,580	420
영	지	30,000	3,838	782

주: 국내가격은 국산 중품의 경동시장 도매가격이며, 중국산은 CIF가격을 7월 평균환율 790.12원/US1\$ 적용 환산.

- 현재 수입제한품목을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위장수입하거나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영지버섯은 1977년부터 수입이 개방된 품목으로 각종 드링크류 등의 제품원료로 최근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다) 한중 수교에 따른 한약재부문 대책방안

- 한중 수교에 따른 한약재 부문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인삼 및 영지를 포함한 모든 한약재(제품원료 포함)에 대해
  -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국산과 제품의 차별화를 유도
  - 관세청과 동식물검역소에서 통관검사와 동식물검역을 강화
  - 수출용원자재의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단속 강화.
  - 한약제 품질검사소에서 모든 수입 한약재에 대해 철저한 검사.
  - 우리나라 한약재와 중국 한약재의 식별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한약재 수요를 파악하여 (1) 전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 (2)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 중에서 잠재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 그리고 (3)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한약재 중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구분.
  -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현지투자 등의 방안을 강구.
  - 국내생산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 원산지표시제, 식품 및 의약품으로서 엄격한 검사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유통구조의 개선과 홍보강화 등으로 제품을 차별화.
  - 잠재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 경영 지도와 생산자금 지원, 판로확보 등을 통해 자급기반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국내 재배가 유망한 잠재적 경쟁가능 품목을 선정하여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여 국산 약용작물의 경쟁력을 제고.
  - 산간지역에 무공해 한약재 생산단지를 지정하고 지역산업으로 집중 지원, 개발.
  - 한약상이나 가공공장 등 대규모 소비처와 계약재배 확대.
  -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의 육성, 보급과 조제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제고하고 성력기계화 재배를 유도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성 향상.
- 그밖에 중국의 풍부한 약용작물 유전자원을 수집, 확보하고 신품종의 육성과 새로운 재배기술에 관한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각종 약용작물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와 의약품으로의 제품화를 위한 공동연구 사업의 추진.

### 라) 앞으로의 연구과제

- 한약재부문의 기초자료수집.
  - 국내 한약재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 및 소비실태 파악.
  - 중국의 한약재 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 및 소비실태와 관련 지원 행정체제 파악.
-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의 개발로 새로운 수요 창출.
  - 식품개발연구소 및 인삼연초연구소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

### 3) 인삼

#### 가) 한국 및 중국의 인삼 생산 및 교역실태

- 인삼 및 인삼제품은 단일 품목으로는 우리 나라 농산물중 가장 수출액이 많은 품목으로 1990년에는 1억 6천만달러나 수출하였음. 뿐만 아니라 그 성가면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품질로 알려져 있어 홍콩의 국제 인삼시장에서 경쟁국인 중국산에 비해 2~3배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 고려인삼은 고려 및 이조시대를 통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국 수출품이었으나 중국의 저가삼에 밀려 고급 홍삼시장을 제외하고는 국제시장에서 중국삼에 밀리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인삼 산업은 정부에서 독점 생산, 가공, 판매하는 홍삼부문과 민간에서 담당하는 백삼 및 백삼제품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홍삼의 경우 UR협상에 대비하여 이를 담당하던 전매청을 전매공사, 그리고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개편하여 부분적이거나 민영화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길림성·요령성 및 흑룡강성의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인삼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다량의 저가삼을 생산함

으로써 세계 동양삼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고 있으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생산과 가공기술이 앞선  
다고 하나 실제 품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오직 한가지  
품종 뿐이지만 중국은 8~12년생인 신개하, 석주삼과 열  
을 내린다고 알려진 칠천삼, 그리고 미국 등지의 화기삼  
까지 재배하고 있으며, 단수에 있어서도 오히려 중국이  
앞서 있음.
  - 다만 기후나 토양조건에 의해 한국 삼의 경우 너두가 짧  
고, 지근이 잘 발달하여 사람의 형태를 닮았다는 점, 그  
리고 삼 향기가 진하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것이 국제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성가를 유지하는 이유임.
- 인삼의 경우는 인삼사업법에 의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추  
천에 의해서만 수입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직  
접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중국이 인삼산  
업을 적극 육성하여 홍콩·대만 등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의 고려인삼 시장을 상당히 잠식하고 있음.
  - 중국 또는 대만의 경우 직접 수출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홍콩을 경유한 간접교역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

표 36 중국·홍콩에 대한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 실태

단위: M/T 및 천 \$

		1988		1989		1990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백 삼	중 국	39.7	3,733	27.3	2,640	11.0	915
	홍 콩	18.7	1,768	65.8	6,488	52.4	4,711
홍 삼	홍 콩	97.5	19,005	109.8	26,443	141.8	40,790
인삼정	홍 콩	37.0	9,886	50.7	15,900	88.5	27,564
인삼차	홍 콩	28.7	882	27.0	871	50.3	1,593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홍콩에 수출하는 인삼의 60~70%가 대만으로 재수출되고 있다고 함.

- 현재 인삼제품 제조업체들이 중심이 된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에서 원료용 인삼을 수입하게 해 달라는 진정을 하고 있는 실정임.

나) 한중 수교가 인삼부문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 한중 수교로 말미암아 현재 대만에서는 고려인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던 대만에 대한 인삼 및 인삼제품의 수출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됨.
- 인삼부문의 경우 워낙 우리나라 고려인삼의 성가가 높기 때문에 비록 수입을 자유화 하더라도 홍삼 등 고급인삼의 수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중국측의 고려인삼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 그동안 홍콩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되던 물량이 직접적으로 거래됨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며,
- 양국간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베일에 싸여있던 한국의 인삼 생산, 가공, 판매 등의 기술이 이전되어 고려인삼의 독점적인 성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중국산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소지가 많고,
- 중국 來往客 또는 밀수 등에 의해 불법 유입된 인삼의 유통 확대.
- 높은 원료용 미삼가격 때문에 고전하는 국내 인삼제품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가의 중국산 원료용 삼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며,
- 한국의 인삼제조업체들이 중국 현지에서 합작형태로 생산, 가공한 인삼제품이 직접 수입되거나 혹은 국제시장에서 고려인삼 시자을 잠식할 우려가 큼.

다) 한중 수교에 따른 인삼부문 대책방안

- 장기적으로 UR협상이 타결될 것에 대비해서 현행의 수매제도, 인삼경작자에 대한 자금 지원, 홍삼의 독점적 가공 및 판매방식, 수출 지원자금(농산물가격안정자금) 등 전매제도를 개선하고 인삼관련 지원행정체계를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재정비.
- 한중 수교와 관련하여 고려인삼의 대중국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일부 저가삼의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입허용시 수입창구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익법인, 예를 들어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 등에서 관장케 하고, 수입에 따른 이익을 인삼산업의 발전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입원료를 제품 제조에 이용할 경우 품질 및 함량, 원산지 표시 의무화.
  - 한국의 가공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국내의 생산 및 가공기술의 중국 이전을 통제하고,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일정 부분만 국내 반입 또는 기존의 고려인삼의 국제시장에서 판매하는 등의 규제.
  - 중국의 남부 또는 홍콩에 고려인삼의 대 중국 수출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현행의 독점적인 수출업체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고려인삼의 성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중국 수출용 4년근 低價 홍삼의 시험적 제조.
-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음 사항이 선결되어야 함.
  - (1) 시장개방에 따른 삼사업의 구조조정
    - 삼가안정 및 생산자 보호 통해 안정적인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생산자 단체에

서 책임감 있게 주도해 나갈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보완.

- 저가의 외국산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저년근, 저가 홍삼 개발.
- 인삼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나 지원이 없이도 인삼경작용자금, 영농기계화 자금, 수매, 비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 인삼의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비 절감

- 기업농 형태의 경작을 지양하고 자작농위주의 경작을 유도하되 산지를 집단화·단지화(삼마을 조성)하여 공동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 식재기, 관리기 등 성력기계 보급과 개량해가림의 보급을 확대.
- 양질의 청정인삼 생산지도.
- 외국삼과 경쟁력 강화와 제품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밀식, 직파재배 권장.

#### (3) 유통구조의 개선

-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비축사업의 실시.
- 인삼 생산자조합을 연계한 계통출하 확대와 제품업체와의 계약재배 확대.
- 주산지별로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품질보증제 확대.

#### (4) 인삼의 효능, 품종, 재배, 가공 및 포장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동양삼(고려인삼 및 중국삼)의 兩大 공급자인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세계적으로 동양삼의 소비촉진과 국제시장에서 蔘價管理 등을 위해 공동노력.
- 인삼협동조합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통한 대만과의 민간외교 강화로 현재 고려인삼에 대해 不買運動을 벌이

고 있는 대만 시장을 지켜야 함.

라) 앞으로의 연구과제

- 인삼의 제품별 소비 및 거래 실태조사.
  - 인삼의 가공형태별 유통구조와 소비실태.
  - 인삼의 등급화·규격화 실태.
- 중국의 인삼산업에 대한 정보 수집.
  - 인삼 관련제도, 법규 및 행정추진체계와 지원실태.
  - 지역별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및 수출실태.
- 인삼제품의 다양화와 새로운 시장 개발.
  - 인삼 및 인삼제품의 지역제품으로 개발.
  - 새로운 인삼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 고려인삼의 효능, 한국 인삼과 중국 삼의 식별방법에 대한 홍보.
- 국제시장에서 고려인삼의 경쟁력.
  - 가격 및 품질 경쟁력.
  - 새로운 시장 개척방안.

## 다. 자재산업부문

### 1) 중국의 농업자재산업 현황과 수출입 정책

#### 가) 농업기계화와 농기계 산업의 현황

- 전체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보급된 트랙터 및 경운기는 대부분이 건자재 등의 운반작업에 이용되고 있어 경운·정지, 이앙,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저조한 실정이나 관개배수용 농기계는 상당히 발전돼 있음.
- 중국 농기계의 품질은 우리나라보다 미흡하나 거의 모든 기종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농촌실정에 맞게 자체 기술로 생산 공급하는 기종도 있음(예: 보트 경운기, 경운기 부착용 소형예취기 등).
- 1995년까지의 농업기계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개방화정책에 따라 농기계 생산업체의 자생능력 향상, 지역 특성에 맞는 농기계 보급 촉진, 농촌인구의 제조업분야 취

표 37 주요 농기계 보유 현황

구 분		1988	1989
농업동력(백만kW)		265.24	280.06
트랙터 (천대)	소 형	5,960.8	6,533.6
	중·대형	871.1	847.2
	계	6,831.9	7,380.8
동력이앙기(천대)		14.032	15.047
콤 바 인(천대)		35.286	36.572
동력예취기(천대)		207.714	277.206
동력탈곡기(천대)		4,248.153	4,525.918
농용트럭(천대)		584.6	605.8
관개배수용기계(백만kW)		65.74	68.69

업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생산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 1989년 현재 트랙터 7,381천대, 동력이앙기 15천대, 콤파인 37천대를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농기계의 보급율은 트랙터가 3.3%이고, 나머지는 1%에도 미치지 못함.

표 38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1989년 말 현재)

단위: %

경운·정지	이양	수확	관개배수
48.1	13	6	58.1

표 39 주요 농기계산업 현황(1989년말 현재)

구분	제조업체수 (개)	매출액 (백만US\$)	종업원수 (천명)	고정자산 (백만US\$)
계	2,638	5,621.3	1,259.9	3,882.4
중·대형트랙터	13	552.7	91.4	451.3
소형트랙터	94	1,107.2	111.2	371.6
엔진	142	1,869.6	220.1	804.1
수확기계	34	123.4	21.8	75.5
농산물가공기계	81	72.2	20.5	39.4
운반기계	170	521.4	66.2	182.3
관개배수	187	356.6	68.8	153.9
가축사양관리	55	88.0	19.6	63.0
기타	1,852	930.2	640.3	1,741.3

- 중국의 농작업 기계화율은 경운·정지 48.1%, 이양 13%, 수확 6%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1989년 중국의 농기계 제조업체수는 2,638개소이고, 매출액은 5,261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1,260천명임. 아직까지 이앙기계, 수확기계 제조 기술은 발전되어 있지 못함.

## 나) 중국의 농업기계화 추진 목표

표 40 기계화 면적 및 기계화율 목표

구 분	1990		1995	
	기계화면적	기계화율	기계화면적	기계화율
	백만ha	%	백만ha	%
경운·정지	46.7	47.6	56.7	57.0
파 종	19.3	13.0	31.1	22.0
수 확	9.3	6.4	18.7	13.0
탈 곡	300.0	70.0	350.0	76.0
방 제	9.1	6.3	14.7	10.1

- 1995년까지 기계화율 목표를 경운·정지 57%, 파종 22%, 수확 13%, 탈곡 76%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약 80~95% 수준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고 있음.
- 1995년의 농기계 보급목표는 트랙터 9백만대, 콤바인 7만대, 작업기 11백만대 수준임.
  - 1995년도의 전체 농기계 생산액은 연간 4조 2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표 41 농기계 보유목표

구 분	1990	1995
트랙터(백만대)	7.9	9.905
- 중·대형	9.9	1.05
- 소형	7.0	8.0
콤바인(천대)	40	70
작업기(백만대)	7.7	11.3
동력방제기(백만대)	0.4	0.5

표 42 농기계 생산 목표

트랙터			엔진	콤바인	동력작업기	운반장비
계	중·대형	소형				
백만대 1.2	0.1	1.1	백만kW 51.5	천대 10	160	150

## 다) 농기계 수출입정책

## 〈수입〉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중·대형 트랙터, 대형 콤바인, 스프링클러부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이 가능하거나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품목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 선진 및 적합기술 도입: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선진기술과 현재의 생산 및 관리 상황 또는 농업적 필요성에 적합한 기술을 도입하려 하고 있음.
- 대부분의 농기계는 국내조건에 맞추기 위해 자체개발되고 있으며, 기술이나 제품의 수입은 보조 수단으로 대량수입은 국가의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 억제하고 있음.

## 〈수출〉

- 다양한 품목의 생산수출이 가능하며 구조, 성능 등의 개조 또는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자체적인 농기계 산업 구축 및 개발지원 원칙아래 기술 이전 및 농기계 수출에 깊은 관심을 보임.
- 주로 개발도상국의 기호, 경제조건, 이용조건 및 기술적인 실정에 적합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여 환영받고 있음.

표 43 연간 농기계 판매액

구 분	1985	1989
국 내(십억\$)	2.77	4.45
해외(수출)(백만\$)	25.15	11.31

표 44 중국의 비료 생산 및 소비실적

단위: 천톤

구 분	생 산			소 비		
	1988	1989	1990	1988	1989	1990
질소질 비료	13,422	13,608	41,240	16,255	17,868	18,347
인산질 비료	3,239	3,607	3,728	4,302	4,931	5,103
가리질 비료	39	61	35	1,169	1,431	1,153

## 나) 중국의 비료 생산 및 소비

- 1990년의 총비료 생산량은 18백만톤으로 우리나라의 20배에 가까운데, 그 중 질소질 비료가 79.1%, 인산질 비료가 20.7%, 가리질 비료가 0.2%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의 비료생산이 요소 등의 질소질 비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의 비료 소비량은 1990년 24.6백만톤임. 소비량의 30% 가까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1989년 비료 수입량은 697만톤이고,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임. 수입비료 가운데는 질소질 비료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마) 중국의 농약 생산과 소비

- 중국의 농약공업은 자급을 위한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중간체 및 농약원제 합성, 그리고 농약제형 등이 개발 연구되고 있음. 중국의 농약산업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

표 45 중국의 비료 수출입 실적

단위: 천톤

구 분	수 입			수 출		
	1988	1989	1990	1988	1989	1990
질소질 비료	3,182	4,326	4,279	18	15	7
인산질 비료	1,103.0	1,340.2	1,533.7	7.6	34.7	40.6
가리질 비료	1,144	1,378	1,158	-	-	6

키게 되어 농산물의 수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중국의 농약공장수는 200개가 넘고, 직원이 10만명에 가까움.

○ 1980년 이전에는 전무하던 중국의 농약 수출량이 1984년에는 주성분량으로 6,400톤이었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1989년 중국의 농약 생산량은 유효성분으로 331천톤에 이르고 있는데, 살충제가 73%, 살균제 14%, 제초제 12%, 생산조정제 1%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농약 소비량은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이며,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ha당 약 2kg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ha당 소비량 약 8kg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현재 대부분의 농약 생산과 소비가 공업이 발달된 해안지

표 46 중국의 농약 생산량(1989)

약 제 별	유효성분(M/T)	비 율(%)
살 충 제	242,000	73
살 균 제	44,000	14
제 초 제	42,000	12
생 장 조 정 제	3,000	1
합 계	331,000	100

표 47 한국의 대중국 비료 수출실적

단위: 천M/T, 천\$

비종	1989		1990		1991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요소	18	2,831	-	-	-	-
황산암모늄	17	1,395	6	406	1	61
황산가리	16	3,490	36	7,193	-	-
복합비료	50	10,216	31	4,759	104	17,796
계 (A)	101	17,928	72	12,357	105	17,857
총수출(B)	1,132	174,458	1,169	175,342	1,071	153,554
A/B(%)	8.9	10.3	6.2	7.0	9.8	11.6

역에 집중되어 있고,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농약 사용수준은 아직도 낮음.

- 중국도 경제발전으로 농촌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농업기계화가 진전되게 되면 제초제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 농업자재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과 전망

### 가) 현황

- 1991년까지 농약과 농기계는 중국과의 수출입 실적이 전혀 없음.
- 1989~91년 비료는 중국에 72~105천톤 정도가 수출되었으며,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은 없었음. 우리나라 전체 비료 수출액에서 대중국 비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2%였음.
- 중국은 비료 구매력이 높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료 수출이 유리한 면이 있지만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구미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수출실적이 매우 낮음.

- 현재의 우리의 대중국 비료 수출은 생산회사가 직접 수출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종합상사가 대행하고 있음. 그 이유는 종합상사의 해외지사가 여러 곳에 상주해 있고, 정보나 마케팅 전략이 앞서 있기 때문임.

#### 나) 전망

##### <비료>

- 중국의 비료 생산능력은 국내 수요의 50% 정도만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이고, 나머지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구매자로 우리의 수출 잠재력은 크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중국은 대량구매로 가격을 매우 낮게 하여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입찰에 참가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 결국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출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수교를 통하여 복합비료 등은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있음.

##### <농약>

- 중국의 단보당 농약 사용량이 낮고 농약 제조기술도 우리에게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함. 또한 인건비가 우리에게 비해 낮고 환경보전에 대해 규제도 우리보다 적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우리보다 훨씬 낮아 현재로선 수출전망이 불투명하며, 오히려 수입의 가능성도 있음.

##### <농기계>

- 중국의 농기계 수요는 지역경제발전의 정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기계 수요기종이 다양하고 동일 기종내에서도 신형, 구형 등으로 차이가 큰데, 연간 수요는 경운기 80만대, 트랙터 80~90만대, 이앙기 10만대, 농업용 엔진 800만대 수준이나 중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 앞으로 농기계 수요는 계속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농기계 생산은 외국(독일·미국)과의 기술제휴에

의해 대형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낮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가격이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져 대형 농기계의 수출 전망은 매우 어두움.

- 한편 관리기, 이앙기, 경운기, 분무기 등의 소형 농기계는 가격 경쟁력은 낮지만 품질, 디자인 등 비가격 측면에서는 우위에 있어 제품 차별화를 통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음.
- 농기계 제조회사들은 자체 생산부품의 하청화 촉진, 해외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한 중국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데 최근 1992년 경운기, 농용엔진 등이 일부 수출되었음.

### 3) 문제점 및 대책

- 농업자재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살펴본 바와 같이 현 단계로서는 전망이 불투명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비료, 농기계 등의 수출 전망이 있으므로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농업자재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 협정 등을 통한 산업협력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정부차원에서 투자협정, 금융지원 등의 강력한 협조가 필요할 것임.
- 연간 30만톤 생산용량의 비료공장 건설에 약 4억불이 소요되는 등 비료 합작투자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므로 합작 투자의 가능성이 낮음. 대중국 비료 수출의 촉진을 위해선 복합비료 등 소량 품목을 많이 개발하여 수출 확대를 꾀해야 할 것임.
- 농약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낮은 중국산 농약이 많이 수입될 수 있음. 중국 농약은 Purity가 낮고 약효 등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조항의

강화가 필요함.

- 수도작용 농기계 특히 경운기·이앙기·분무기·소형트랙터 등의 기종을 중심으로 국내 농기계 업체가 컨소시움을 형성해 생산협력 형태로 진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4) 향후 연구과제

- 중국의 농업 자재산업 현황과 수요 전망
- 중국 농업 자재 시장 진출방안
- 농업자재의 합작 생산방안

## 바. 임업부문

### 1) 중국의 임업현황

- 중국의 산림지역인 흑룡강성·길림성·복건성 등 3개성은 산림자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기타지역은 황폐되어 조기녹화를 위해 「국토녹화위원회」를 설치 연간3백만ha 녹화 추진.
  - 산림면적: 125백만ha(전국토의 12.9%) → 아국 산림면적 6.5백만ha의 19배.
  - 임목축적: 9,141백만 $m^3$  → 아국 임목축적 257백만 $m^3$ 의 36배.
  - ha당 임목 축적: 73 $m^3$  → 아국 40 $m^3$ 의 1.8배.
- 합판 등을 비롯한 임산가공업체는 소규모의 다수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의거 확대되어 가고 있음.

표 48 한중 임업생산 비교

구 분	중 국		한 국	
	업 체 수	생산능력	업 체 수	생산능력
제 재 목	72,000개	24백만 $m^3$ /연간	1,700개	8백만 $m^3$ /연간
합 판	491	1.49 "	49	1.4 "
섬 유 판	387	1.37 "	5	0.35 "
파티클보드	150	1 "	4	0.39 "

※ 중국의 목재자급율: 약 90% 내외.

### ○ 임업기술 연구.

- 임업연구기관(239개, 18,189명) 및 임업대학(11개), 임업기술학교(56개) 등이 있어 임업기술연구가 활발한 실정임.
- 양국간 분야별로 상호 자료교환·공동연구 필요.

### ○ 산림부산물 생산현황(1990).

-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생산통계 없음.
- 밤 100천M/T, 호도 190M/T, 아몬드 122천M/T, 대추 545천M/T.

2) 교역현황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임산물 전체수출의 2% 점유.
  - 합판이 주품목(92%), 목제품, 석재류등.
- 한국의 대중국 수입: 임산물 전체수입의 4% 점유.
  - 고사리, 표고, 도토리, 꽃감 등 부산물의 전체수입이 46%, 원목, 제재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목재류가 48%, 석재류가 6%.

표49 한국의 임산물 수출입

단위: 백만\$

구 분	1991		1992. 9월말	
	전 체	중 국	전 체	중 국
수 출	592	10	351	7
수 입	1,994	67	1,454	55

<투자현황>

- 1990년에 최초로 석재개발투자 진출.
- 업종 및 투자규모: 석재개발 4개업체 1,550천\$ (단독1, 합작3)
  - \* 1개업체 진출추진중(5,000천\$).

<임업관계자 교류현황>

- 1990년부터 임목육종연구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아국의 임업관계자 11명(임업조사단체외)이 중국을 방문.
- 임업연수 등을 위해 중국의 임업관계자 9명이 아국을 방문하여 임업관련자료 교환.

3) 전망

가) 교역분야

<수출>

- 전체적으로 대중국 임산물의 수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부분적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과 무역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합판을 포함한 보드류의 소비와 포장에 필요한 판지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해외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합판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 목재류 수출 증대에 노력(중국의 목재류 관세율을 아국 관세율 수준으로 인하토록 요구).

#### <수입>

- 대부분의 임산물이 수출입자유화품목이고, 나머지는 곧 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으로 인하여 대중국 임산물의 수입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대부분의 임산물이 기호성이기 때문에 좋은 품질에 대한 수요가 소득 증가에 따라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낮은 품질의 중국산이 계속 들어 올 경우 의외로 수입량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하지만 많은 임산물이 수확기에 적정수준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농촌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노임 상승과 절대노동량의 부족은 대부분의 임산물들을 수확하기 힘들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는 국내산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양질이기 때문에 비싼 국내산이 아니라 생산비용의 상승과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비싼 국내산이 될 때 국내산이 중국산과 경쟁하기는 점점 어려워 질 것임. 즉 국내산의 생산구조의 비효율성과 나아가서는 생산구조의 붕괴에 따른 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중국산의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음.
- 다만 흑룡강성 등으로부터 고로쇠나무, 참나무 등 특수 수종원

목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임업기술 연구교류

- 한중간 수종개량 공동연구(양국간 합의서 채택추진중).
    - 연구주체: 임목육종연구소, 흑룡강성임업과학연구소.
    - 연구기간: 1993~96(4년간).
    - \* 1993예산: 1억 5천만원.
    - 연구내용: 활엽수, 침엽수, 유실수 등 주요 조림수종과 육종기술 공동연구
  - 기타분야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 대상분야(7개).
      - 한중간 국유림발전에 관한 비교연구.
      - 솔겹질각지벌레 방제 및 피해지역의 관리연구.
      - 한중 목재산업 협력증진 연구.
      - 대기오염과 산성비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 황폐된 산림유역의 복구 및 유지관리방법 개발연구.
      - 한약자원식물 증식을 위한 종자교환.
      - 신목질 복합보오드 개발 연구.
    - 추진방법: 한중경제·무역·기술협력공동위 (1992. 12. 14~12. 16) 개최 시 『한·중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토록 추진하고,
    - 동 기술협력위원회 구성시 임업분야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제외
- 다) 합작투자
- 중국의 목가공공장의 업체규모가 작고, 원자재부족, 시설의 노후화, 생산성문제 등 당장의 투자여건은 좋지않음.
  - 다만 흑룡강성·길림성(연변조선자치주) 등 중국의 주요산림지역에 대하여 기업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별도 검토계획.
- 3) 1993년 이후의 임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 가) 임산물의 수입 개방 예시 품목

- 1992년 현재 285개 품목 중에서 278개 품목이 개방되었으며 명목 개방화율은 97.5%임.
- 12993년에 기타견과류(예: 빈장, 피그놀리아노트 등)가 개방예시됨. 명목 개방화율이 97.9%로 향상.
- 1994년 이후에 밤, 잣, 대추가 개방예시는 되지 않았지만 1995년 부터 1997년까지 개방이 예상됨. 명목 개방화율은 100%가 됨.

나) 수입 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밤>

- 밤은 현재 개방예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1995년 이후에 개방이 예상됨.
- 우리 밤은 현재 생산량의 약 38%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에 99% 정도를 수출함.
- 연도별 밤생산 및 수출현황.

표 50 한국의 밤 수출현황

단위 [ 수량: M/T  
금액: 천\$

구분 연도	생산량	수출									
		계		간 밤		통조림		생 울		황 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88	77.652	40,015	91,852	33,490	79,321	5,763	10,476	761	2,050	1	5
1989	78,752	34,762	81,353	29,585	73,158	4,423	6,584	749	1,605	1	6
1990	85,043	36,471	94,279	32,630	88,552	3,452	4,757	387	963	2	7
1991	89.747	33,915	99,222	31,230	94,048	2,329	4,128	356	1,046	-	-

\* 수량은 생울 기준임.

-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밤 생산국으로서 생울과 황울을 일본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음.

표 51 중국 및 한국의 밤 생산 현황

단위: M/T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총 계	404,680	442,327	471,591	480,859	468,447	494,424
중 국	83,198	95,375	110,000	103,576	102,546	100,000
한 국	72,000	58,411	57,047	77,652	78,752	85,043

- 중국과 우리의 다른점은 중국은 생울 및 황울의 형태로 일본에 수출하는데 비해 우리는 간밤과 통조림의 형태로 수출을 하는 것임. 이는 중국밤의 주종이 천진밤인데 알이 작고 구운후 껍질이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군밤으로 최적이어서 생울로 수출이 되고 있음.
- 중국산 밤이 수입된다면 국내 밤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그 이유로는 우선 국내산의 약 50%(비교: 일본수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국밤의 가격이 문제가 되고, 맛이 좋으

표 52 일본의 국별 생울 및 황울 수입현황

단위 [ 수량: M/T  
금액: 천푼

연 도 국 명	1988		1989		1990		1991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총 계	29,458	8,22,102	30,226	9,012,271	29,495	9,197,089	28,013	9,152,922
한 국	1,231	731,374	1,400	805,374	142	-	60	-
중 국	28,092	7,448,038	28,255	8,048,455	28,271	8,372,334	26,825	8,296,720

며 군밤으로서는 국내산 보다 우월한 천진밤이 국내산 군밤을 대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임. 또한 최근에 중국에서 신품종이 개발되어서 개방이 될 경우 군밤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밤도 국내산 밤을 대체할 가능성이 많음.

- 중국산 밤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최근에 통조림 형태로 일부 수입이 되고 있음.

- 통조림 밤의 수입 - 1990: 0.88(M/T)

1991: 33.528(M/T)

- 대책으로는 품종개발, 시업기술 개발을 통하여 질적 우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중국산지 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 만큼의 조정관세를 부과해서 가격 경쟁력이 뒤지지 않도록 노력함. 또한 일본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해서 내수에서 빼앗길 공급량을 수출로 전환하도록 함.

#### <잣>

- 잣은 정식 수입이 되지 않지만 임산물 중에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항구나 공항을 통하여 여행자들이 등짐 상태로 반입을 시켜서 유통하고 있음.
- 중국 잣의 소매가격은 국산에 비해서 10%가 싼데 맛과 질이 국산에 비해 떨어짐.
- 국내 잣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반입의 양도 달라짐.
- 국내 잣 생산량은 1988년 1,126톤에서 1990년 868톤으로 감소
- 국내 잣 생산량은 조림된 잣나무들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그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등에 의해서 수확량은 감소될 전망이다.
- 현재까지는 중국산의 가격이 많이 싸지 않고 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있으나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 뒤지기 때문에 개방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대책으로는 잣 수확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며 가격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조정 관세를 중국 산지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 정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대추>

- 우리나라의 대추 생산은 근래에 많이 늘었음.

표 53 한국의 대추 생산량

연 도	생 산 량(M/T)
1988	4,522
1989	5,063
1990	5,952

- 중국산 대추도 다른 임산물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매우 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함.

표 54 중국의 대추 생산량

연 도	생 산 량(M/T)
1989	454,000
1990	423,000

4) 대책

- 종합적인 대책은 대체로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행해져야 할 것임. 국내 생산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측면과 국내물가 상승 억제 측면을 종합해서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국내 생산이 미비하거나 앞으로 생산요소 시장의 상황에 따라 생산이 점차 힘들어질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억제의 차원과 소비자의 효용을 확대하는 측면

에서 무조건 수입억제를 할 것이 아니라 수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품목별 분류.

- 중국산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수출시장에서 경합이 예상되는 품목: 밤, 표고, 버섯, 잣, 이쑤시개, 환봉, 죽제품.
- 국내생산이 현재 미비하거나 장래 생산량이 격감될 품목:고사리, 은행, 아몬드, 호도, 죽순.

○ 종합적인 대책.

- 강화된 식물검사와 식품검사를 계속함으로써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반입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제품이 수입되도록 유도
- 식물검역 기간(반입 후 10일 이내)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고 농산물에 대한 보세창고 사용료가 저렴하여 수입업자들이 출하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보세창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식물 검역이 이루어 지지 않고 출하시기 조절에 따른 수입업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수입을 조장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
- 대개의 경우 임산물의 수입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은행, 도토리, 꽃감등) 품목별 반입시기에 따라 계절관세와 같은 대책을 세워서 반입을 억제.
- 국내 생산이 많은 표고버섯, 꽃감 그리고 잔디씨의 경우에는 수입 억제책을 사용해야 하지만, 국내 생산이 수요에 절대 부족한 품목인 경우 (예: 고사리, 죽순, 오동나무 등)는 단순한 수입 억제책보다는 양질의 제품을 수입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 시키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중국산과 국산의 식별 방식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차별화를 통하여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산물은 중간소비자(예: 식당)가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
- 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반입의 경우(이쑤시개용 자작나무 등)는 관세환급제의 신속한 처리 등 제도적으로 가공무역을 억제시키는 제도등을 개선함으로써 무역을 확대.
- 잣 등이 정상 수입을 통하지 않고 항구나 공항을 통해서 등짐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이곳을 봉쇄하는 방법을 강구.
- 조정관세의 한계를 철폐하고 중국 산지가가격과 국내가격 차이로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강구.

5) 향후 연구과제

가) 중국 임업에 대한 연구

- 중국 임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함(특히 산림 정책 면을 중심으로).
- 중국의 주요 임업부산물 생산현황 및 경영상태에 대한 연구.

나) 중국 임산물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식물 및 식품검사제도의 개선 방향
- 수입 임산물의 유통구조(예: 원산지 표시의 실시 방안).
- 주요 품목들의 개방후 생산자 보호 방안.
- 미개방 품목들의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방안.
- 개방에 따른 국가 복지의 변화와 수입규제를 위한 무역정책 (commercial policy)의 비용 및 영향 평가.

다)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 주요 수출품목들의 수출 시장에서의 수출제고 방안.
- 생산력 향상 및 산업 활성화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라) 국내 임업부산물의 생산력 제고 연구

- 생산구조의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 생산력 향상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사. 수산부문

### 1) 현황과 전망

- 1990년 중국의 수산물 총생산량은 12,370천M/T으로 세계 제일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음.
- 1991년도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599M/T, 469천\$로 수산물 총수출액의 0.02% 수준으로 미미한 상태에 있음. 또 수입실적은 물량면에서 8,126M/T, 금액면으로는 2,754만\$로서 금액면에서 볼 때 전체의 37.5%가 연체류 및 갑각류의 가공품이며, 29%가 냉동어류, 그리고 기타연체류가 27.7%를 점하고 있음.

표 55 한·중 수산물 교역 현황(1991)

구 분		물 량(M/T)	금 액(천\$)
수 출	냉 동 명 태	499	354
	계 맛 생 선 목	15	72
	기 타 수 산 물	85	43
	합 계	599	469
수 입	가공연체류 및 갑각류	2,908	10,330
	냉 동 어 류	3,903	7,993
	기 타 연 체 류	1,315	7,641
	기 타 수 산 동 물	- -	1,578
	합 계	8,126	27,542

#### \* 기타수산동물 제외

- 품목별로 수입금액이 많은 것을 보면 냉동피조개가 5,147천\$로 전체의 18.7%를 점하며, 그다음이 냉동삼치 2,748천\$, 골뱅이통조림 1,753천\$, 냉동조기 1,664천\$, 냉동바지락 859천\$의 순임.
- 1992년 6월 현재, 수산물 수입실적은 12,778천\$ (자료: 수산

침)인데, 주요 품목별로 보면 냉동피조개가 3,317천\$, 냉동갈치 2,749천\$, 냉동삼치 1,759천\$ 냉동조기 1,125천\$로서 1991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 중국으로 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국내수요 증대, 자원 감소, 낮은 수입가격 등에 의해 이들 품목의 수입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특히 황해연안의 기호성 어패류(산것)는 낮은 가격과 우리나라와 동일해역에서 어획되는 품종이라는 점 때문에 반입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예를 들면 냉동꽂치나 냉동바지락과 같은 품목은 국내가격이 수입가격의 1.2~1.3배밖에 되지 않으나 골뱅이통조림이나 산미꾸라지는 5.5~7.1배 차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품목에 있어서 관세율에 의한 수입억제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활어, 고급어패류, 저차가공품과 같은 기호성 수산물 수입물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56 중국산 수입수산물과 국내가격 비교, 1991

단위: 원/kg, 배

품 목	국내가격 (A)	수입가격 (B)	A/B	비 고
냉동 봉장어	4,529	2,009	2.3	
냉동 조기	4,935	3,150	1.6	
냉동 꽂치	1,261	1,012	1.2	
냉동 삼치	2,399	1,156	2.1	
냉동 복어	8,900	2,320	3.8	
냉동 바지락	1,559	1,225	1.3	
냉동 피조개	18,892	9,259	2.0	박신중량
냉동 소라	6,044	2,457	2.5	
골뱅이 통조림	20,115	3,690	5.5	수율환산
마른 해삼	52,896	24,346	2.2	수율환산
염장 소라	7,555	4,413	1.7	수율환산
산 미꾸라지	13,000	1,841	7.1	

- 한편 수출품목을 보면 냉동명태, 게맛 생선목 등이 주품목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어분시장잠재력이 커서 향후 원양어획물의 수출전망은 다소 밝게 해주고 있으나, 동명태 주생산지인 북양에서의 대미어획쿼터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인 원양어업의 불황으로 어분원료가 되는 저급어생산이 부진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중국 수출은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2) 문제점 및 대책

### 가) 문제점

- 중국의 해면어업 생산량은 우리나라와 바다를 같이 쓰고 있는 황해 및 동중국해의 생산량이 중국전체 해면어로어업 생산량의 57.3%를 점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어로어업과는 심한 경쟁을 야기시키게 될 것임.
- 특히 중국의 해면어로어업의 연평균 생산증가율이 7.0%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어업신장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표 57 한중간의 해면어로어업 생산량 변화 비교

단위 : 천톤

연 도	한 국	중 국
1980	1,830	2,810
1985	2,262	3,490
1989	2,440	5,030
1990	2,467	5,510
연평균증가율(%) (1980~1990)	3.0	7.0

- 이와 같은 어업생산신장율은 척당 마력수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37.9HP이고, 척당 생산량이 22.6M/T으로서 우리나라 어선 척당 생산량의 44.9%에 불과한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최근 어선 현대화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중고선을 도입하는 등 어선세력의 대형화, 고마력화 경향이 지속될 때 더욱 위협적이 될 전망이다.

표 58 한중간의 해면어로어업 어선세력 및 성능비교(1991)

구 분	한 국(A)	중 국(B)	B/A(%)
척수(천척)	49.0	244.2	498.4
마력수(천마력)	3,671	9,248	251.9
어획량(천M/T)	2,467	5,510	223.3
척당마력(HP)	74.9	37.9	50.6
척당어획량(M/T)	50.3	22.6	44.9

- 한편, 중국의 해면어업 생산 신장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문제로 연결되어 연근해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지만, 이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중국의 어선세력 증대로 어장에서의 주도권다툼이 격화될 것이 예견됨. 즉 고마력화된 중국어선들과 어장이용문제로 심한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향후 어장구역 조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대책

< 국내수입 대응방안 >

- 관세율 조정방안.

- 1991년도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내가격은 1.2~7.1배로 품목에 따라 가격차가 컸음. 수입가격에 대한 국내가격의 차이가 특히 큰 품목은 산미꾸라지 등 활어종류와 골뱅이, 통조림, 마른

해삼 등 가공품목, 그리고 냉동어류 및 냉동연체류 등 이었음.

- 한편,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기본세율이 10~20%로서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수입량이 많은 냉동어류나 냉동연체류 등 냉동품목과 국내 가격과의 격차가 큰 활어계통은 10%가 적용되는 반면 수입이 용이하지 않은 선어·냉장어류나 국내 소비관습에 적합치 않는 필렛 등은 20%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어류나 냉동연체류와 국내산업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는 활어류는 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반면 필요에 따라서 필렛 및 어육관세율은 탄력조정하도록 해야 함.

표 59 한일간 수산물 관세 비교(1992)

구 분	한 국	일 본 (기본) (잠정)
활어류		
(관상어)	10%	10% 5%
(치 어)	10%	무관세 5%
선어, 냉장어류 (필렛제외)	20%	10% 5%(청어, 정어리, 고등어,제외)
냉동어류 (필렛제외)	10%	10%
필렛 및 어육	20%	10%
통조림	20%	105

○ 수입유보조처(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 중국 수산물 수입에 의해 국내 어업의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수입유보조처를 취하도록 하며, 이 제도에 대한 어민홍보를 강화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즉, 수산물은 품종별 생산특화가 어려우며, 대체로 다종의 어획물이 혼획되는 경우가 많아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결성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수협 중앙회 또는 지구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을 중심으로 수협이 직접 산업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어민들간의 단체결성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산업피해구제 신청을 하도록 함.
-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미꾸라지와 복어의 경우 단일 어종을 주생산품목으로 하는 어민이 많아 생산자가 결속력이 강할 수 있으므로 수협에서 이들 어민에 대한 적극적 배려를 하도록 함.

○ HS분류의 세분화.

- 수산업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향후 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HS분류에 누락되어 있어 정책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러한 품목에 대한 HS세분류를 하도록 함.
- 예를 들면 갯지렁이의 경우 kg당 가격이 수천~수만원에 이르고 있으며(1991년 생산지 평균가격은 kg당 13,480원이며, 크기에 따라 가격폭이 매우 큼), 1991년 생산액이 2,665백만원이나 HS분류가 되어 있지 않음.

○ 국내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강화.

- 수입 수산물과 국내수산물의 상품차별화를 위해서 국내 연근해산 어획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생산어민이 어획후 입상, 냉동할 때 소속 수협의 상표를 넣은 채 냉동하여 출하시키도록 하되, 일부 수협에서 연근해산 오징어에 대해 이 방법을 시행한 결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국 수협에 권장시키도록 함.
- 이와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어획물이 8kg, 16kg 등 큰 사이즈로 입상되어 냉동되거나 선어형태로 유통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2kg, 4kg 등 소포장형태로 우통 출하시키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의

실천을 행정지도하도록 함.

〈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

○ 어업구조조정방안.

- 현재 연근해 어선어업은 자원상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어선세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의 결과는 어선척당 어획량의 감소를 유발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어업경영체간 심한 조업경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각한 어선원부족현상까지 겹쳐 생산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어업자원에 대한 적정어획강도를 유지하고, 어선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잉어선세력을 감축함과 동시에 낙후된 어업장비를 보다 현대화하여 경쟁력있는 어업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어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역별특화양식품목의 조정방안.

- 양식어업의 지역별특화품목육성을 위해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어 특화품목을 선정하되 품질향상을 위하여 면허구역준수, 과밀양식방지, 불법양식방지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함.
- 중앙정부는 양식장 면적의 지역간 조정, 가격동향, 수출입에 대한 정보제공, 투자재원의 지원등에 중점을 두도록 함.

○ 수산물의 품질향상 방안.

- 그동안 수산물수출의 주종은 원형 및 저차가공이 주종을 이루어 왔는데, 이는 향후 중국의 등장과 더불어 심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수산물수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가격에 의한 원형 및 저차가공에 있어서도 품질향상에 의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함.

○ 수출제도 개선방안.

- 간미역은 1970년대 이후 대일 수산물 수출의 중요한 품목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1991년 현재 가공물량 2만M/T(원조 환산 10만 M/T), 금액면으로는 5천만\$ 가량이 수출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대일수산물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간미역은 한일 양국간 수출입물량합의제에 의해 수출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수출증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중국산 간미역의 일본시장 잠식으로 일본에서의 수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따라서 중국산 간미역에 비해 품질이 비교적 나은 우리나라 간미역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물량합의제를 폐지하고 자유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이 여의치않을 경우 중국산에 대해서도 우리와 같이 물량규제를 실시 하도록 일본측에 요구하도록 함.

#### < 어업구역 조정 방안 >

- 어업구역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황해 및 동중국해에 있어서 한중일 3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와 관련한 사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즉 황해 및 동중국해는 한중일 3국이 공동조업하는 관계로 어업구역 조정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한중간의 어업구역 조정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염두해 둔 종합적인 조사·연구후 한중일 등의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3) 향후연구과제

##### ○ 중국의 수산물 소비성향파악

- 수산물 소비는 국민 소비관습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중국에서의 수산물 소비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같은 어종이라도 민족에 따라 선호하는 정도가 크게 다르므로 중국에 의한 수산물 수입영향은 단순히 중국의 수산물생산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 중국 자체의 소비성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하에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이는 농업의 경우 농민의 의사결정후에 품목이 선택되는 반면 수산업은 목적어종(target fish) 외에 혼획되는 경우가 많아 어민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어획

- 되는 어종은 그 나라 국민의 소비성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어업생산수단에 대한 연구.
  - 어선은 어업생산수단으로서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조업 형태에 따라 어선구조가 각각 상이함. 한편 어업은 조업형태에 따라 어획강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본화, 기술집약화가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어떤 업종에 어느정도의 어선세력분포를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어업생산의 효율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되며, 그 동향분석을 통해 미래의 어업 발전정도를 추정할 수 있음.
- 양식어업의 기술 및 발전단계에 대한 연구.
  - 현재 세계의 어업동향은 잡는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는바, 미래어업의 발전정도는 양식어업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양식어업은 자본과 기술에 의해 계획생산이 가능한 상업적 생산형태로 이루어져 수출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3. 종합대책

#### 가. 교류 및 협력강화

- 한중 농림수산물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농림수산분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는 양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클것임. 따라서 한중 농림수산분야 교류 및 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재정립되어야 함.
-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농림수산부문 교역 및 교류협력은 우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상호보완적 관계가 유지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추진과 함께 우리 농림수산물도 고부가가치 생산품목 중심으로 분업화, 전문화시키는 방안 검토.
  - 향후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콩, 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
  - 특히 중국의 각 성(省)의 농업지대적 성격의 차이, 식생활의 차이, 식품수급 불균형 등을 감안 각 성과의 보완관계를 강화.
  - 해외투자를 통한 합작사업 추진과 제3국 수출 확대방안 마련.
- 중국과의 농림수산분야 교역은 기본적으로 GATT규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립.
  - 중국의 GATT가입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 UR협상에도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MFN원칙에 의한 대우가 바람직하며 중국에 대한 일방조치(차별대우)는 양국간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우리의 농림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조치에 따라 중국의 입지

적 조건의 유리성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수산물 수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정부 및 민간단체의 「한중농림수산 기술협력위(가칭)」, 민간차원의 「한중 농림수산 우호협회(가칭)」등 교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농림수산물 교역제도 개선, 기술 및 인력교류와 협력, 공동조사연구, 양국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
- 정부간, 업자간의 교류와 대화를 통해 일시에 다량의 농림수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수출자율규제 유도.
  - 양국간의 자연스런 교역질서 유도.
  - 사전 협의로 양국간 통상마찰 완화.
- 민간차원의 경험강화로 중국의 농업개발사업에 적극참여.
  - 제8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가운데 「신강농업개발사업」 등 참여 검토.
- 대중국 수출촉진을 위해 농림수산물 시장정보 및 수출유망품목 발굴.
  - 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시장개척 활동 강화
  - 가공식품, 농업용 자재, 종자, 인삼 등 수출유망 품목 중심으로 시장개척 추진.

#### 나.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

##### 1) 필요성

- 우리나라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역량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관리제도도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국제무역규범에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수입개방 폭의 확대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축소 또는 방지하고 교역대상국과의 통상마찰 없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

는 즉, 국제무역 규범인 GATT에 근거한 수입관리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였는데 이러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산업피해구제제도”(1987년 발효된 대외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제도)임 특히 UR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긴급수입제한 제도를 별도로 최종의정서 초안에 규정한 의도와 일치하는 조치임.

- 특히 농림수산물의 경우 GATT의 BOP졸업으로 수입자유화율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중요 품목의 경우도 1997년까지 수입자유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농림수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향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상공부에 소속되어 있어 주로 공산품에 그 비중이 두어지고 있고, 신청준비과정의 어려움, 절차의 복잡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2) 현황

-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제19조에 근거를 둔 공정무역으로 인한 수입급증시 피해구제조치(긴급수입제한)와 GATT 제6조에 근거를 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피해구제조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상공부 산하의 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무역위원회의 피해구제가 관세조치일 경우와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덤핑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와 관련될 경우 재무부 산하의 비상설 기구인 관세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엄밀하게는 이원화되어 있음.
-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실 4과에 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농림수산물

및 의약품(화장품)은 산업피해조사2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발동요건은 우선 특정한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동종상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음. 위와 같은 발동요건이 성립한 경우라도 피해구제신청이 있어야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가 이루어 짐. 피해조사 신청자격은 이해관계자는 10인 이상의 당해 물품의 생산자를 말하며 법상으로 당해 국내산업의 생산자 또는 서비스공급자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발동요건이 성립한 품목의 피해조사 신청이 있을 후 관계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 최종적인 구제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최장 300일이나 걸리는 등 복잡한 절차를 요함.
-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생긴 이후 1992년 7월까지 총 20건의 산업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농림수산물 분야가 12건, 공산품이

표 60 농림수산물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실적

대 상 품 목	제 소 일	제 소 자	조치건의일	구 제 조 치
양고라 토끼털	1988. 3	양토협동조합	1988.12	국산품 우선구매
새우젓	1988. 7	수산업협동조합	1989. 2	수입제한(수산청장)
고추가공제품	1989. 5	농업협동조합	1989. 9	수입제한(보사부장관)
돼지고기 통조림	1989. 7	유가공협회	1990. 2	관세인상(30%→50%)
우모분	1990. 2	단미사료협회	-	신청철회
코코아 분유	1990. 3	유가공협회	-	신청철회
나무 젓가락	1990. 5	목할저협동조합	1990.12	관세인상Z(13%→53%)
활석분	1990. 8	대한광업회	1991. 4	관세인상(10%→30%)
팜콘옥수수	1990.11	농업협동조합	1991. 7	국산품우선 구매
당면	1991. 3	면류협동조합	1991. 9	관세인상(13%→60%)
이쑤시개 등	1991.12	목환봉협회	1992. 7	관세인상(11%→51% 조정관세)
우산 등	1991.12	양산협동조합	1992. 7	재무부검토중(11%→72%건의)

8건으로 농림수산업분야가 절반이상을 차이하고 있음. 12건의 농림수산물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 상황을 보면 수입수량이 제한된 품목은 새우젓 등 4개 품목, 관세가 인상된 품목은 돈육 통조림 등 6개 품목, 국산품 우선구매품목은 앙고라 토끼 털 등 2개 품목이 있음. 나머지 2개 품목은 신청철회로 조사가 중단된 바 있음.

### 3) 문제점 및 대책

- 농림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는 달리 그 특수성으로 인해 부패성 및 계절성이 높고 단기적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음. 피해조사기간이 통상 피해조사 신청후 8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구제조치가 해당산업에 영향을 주는 기간을 감안하면 최소한 피해 신청후 1년이 경과하고 있음. 따라서 농림수산물의 경우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피해구제조치가 신속히 이행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농림수산물 수입이 확대됨으로써 지금까지 산업피해구제 20건 중 농림수산물이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업 구제에 대한 인원 및 전문성 결여, 피해판정 및 구제조치의 복잡성, 신청자범위의 한계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 피해판정 절차 및 조치를 단순명료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림수산물 관련 특별 전담기구(예컨대 가칭 농림수산물 산업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여 향후 가속화 될 수입개방에 의한 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신청 접수시 첨부해야 하는 조사항목이 많고 난해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되는바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

표 61 주요 선진국의 산업피해구제기관 비교

	미 국	캐 나 다	호 주	E C	한 국
구성	국제무역위원회 (USITC)	국제무역심사 위원회(CITT)	산업지원 위원회(IAC)	EC집행위원회 (DGI)	무역위원회 (KTC)
성격	대통령산하 독립규제위원회	재무부산하 독립규제위원회	상공기술성 소속 자문위원회		상공부소속 준독립행정 위원회
구성 위원	6명(상임) 472명 (3국14실24과)	9명(상임) 100명 (3국 13과)	9명(상임) 260명(2국2실 12과)	17명 100명 (1국 1실)	7명(상임 1명) 50명(1실 1담당관 4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피해 조 사 및 구제 건의</li> <li>- 수입급증</li> <li>- 덤핑(보조금 지급)</li> <li>- 지적소유권 등 불공정 수입</li> <li>○ 국제경쟁력 조사</li> <li>○ 무역 및 관 세 제도조사 연구</li> <li>- 산업교역상 품모니터링</li> <li>○ 관세, 수량 규제 및 무 역 조정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피해 조 사 및 구제 건의</li> <li>- 수입급증</li> <li>- 덤핑(보조금 지급)</li> <li>○ 경제, 무역, 관세 문제에 관한 일반적 조사</li> <li>○ 관세 및 수 량규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지원 업 종 및 수단</li> <li>• 1, 2, 3차 산 업</li> <li>○ 산업조정 지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피해 조 사 및 구제 건의</li> <li>- 수입급증</li> <li>- 덤핑(보조금 지급)</li> <li>○ 관세 및 수 량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피해 조 사 및 구제 건의</li> <li>- 수입급증</li> <li>- 덤핑(보조금 포함)수입</li> <li>- 지적소유권 피해 등 불 공정 수입</li> <li>- 무역 및 유 통서비스 공 급 급증</li> <li>- 수입이 산업 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의 조사분석</li> <li>○ 국제무역제 도 및 경쟁 사례조사</li> <li>○ 불공정수출 입 행위조사</li> </ul>
구제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수량 규제 및 산 업조정 지원</li> </ul>

자료 : 상공부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자료 90-1)

※ 일본의 산업피해조사, 판정 및 구제조치를 행하는 기관은 국가행정기관인  
대장성으로 되어 있어 다른나라와는 매우 상이함.

서를 생산자 단체에 만들어 농림어업생산자들이 언제라도 피해발생시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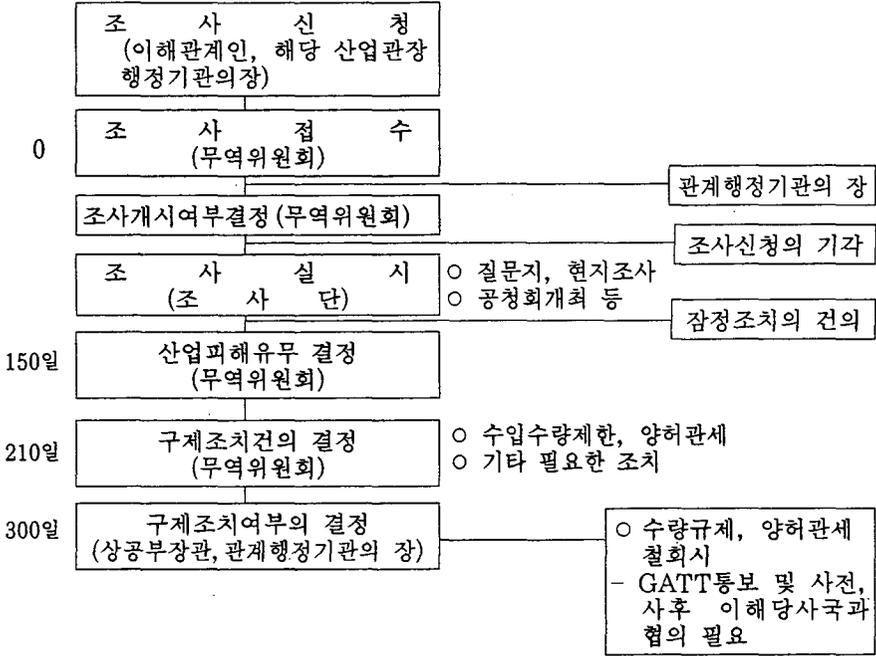
#### ○ 조직의 개선

- 무역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나 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 5년보다 짧아 위원이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 9년,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CITT)위원 5년 경우처럼 임명권자보다 길거나 같게할 필요가 있음.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상공부 장관 소속 직원이고 기타 비상임위원도 상공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업피해조사 개시 여부결정 및 조사 종결후 피해판정, 구제건의 조치에 있어 상공부장관의 영향력이 큼. 따라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같이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기구화하여 독립성 확보 및 독자적 수행능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업무절차의 개선

- 조사 등의 업무를 통해 산업피해를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고 피해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조사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 조사신청자의 범위도 생산자로 국한하고 있으나 국제화 및 다국적화 추세에 따라 신청자격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절차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들 수 있음.
- 구제 절차를 보면 피해구제신청 → 예비조사 → 조사개시판정 → 무역위원회 조사 → 피해판정 → 구제조치 결정 → 시행단계로 신청시의 질문사항과 그후 예비조사 사항 그리고 무역위원회 조사 사항에 큰 차이가 없어 그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음. 피해조사시 산업피해조사에 경험이 없거나 적은 행

그림 4 수입금지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절차



자료 : 상공부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자료 90-1)

정사무관(2년마다 평균적으로 타부서로 보직이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산업피해 조사의 일관성, 전문성이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현행 산업피해 구제기관의 조사결과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는데 많은 제약이 있음.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기능별 조직화,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됨.

○ 피해 판정기준의 개선

- GATT 제19조 1항에서는 “수량증가(increased quantities)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는 “급증”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입물량의 대폭 증가만으로 축소 해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국내생산에 대한 상대적 수입증가 경우도 포함 될 수 있도록 “증가”로 표현 할 필요가 있음. GATT 규정에 일치시킨다는 잇점도 있음.

- GATT 등 조항의 피해규정은 “중대한 피해(serious injury)”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로 규정되어 있어 GATT규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피해구제의 조사 판정 기준이 되는 대외무역법에는 “실질적인 피해”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구제조치의 하나인 긴급관세에서는 “중대한 피해”로 규정되어 있어 이해 당사국과의 해석상 통상마찰의 우려도 있음. 따라서 GATT규정에 일치시켜 “중대한 피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피해 축소 및 방지를 위한 관세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 운용
  - 탄력 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용
  - 종량세 도입으로 저가 농산물 수입 억제

## 다. 검역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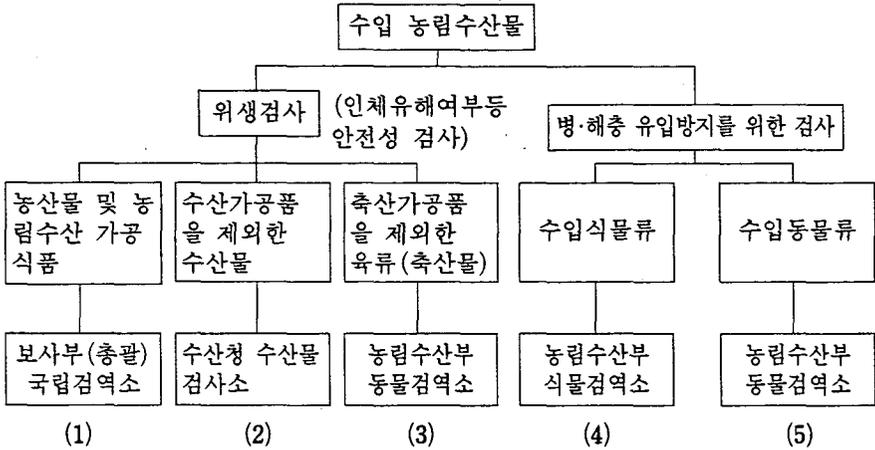
### 1) 기본원칙

- BOP졸업, 쌍무협상 등으로 농림수산물 수입급증. 이에 따라 검역물량 급증, 품목의 다양화, 교역국의 다변화 등 검역여건 변화. 예컨대 식물검역의 경우;
  - 검역물량 증대: 26,088건(1980) → 67,238건(1991)으로 258% 증가
  - 품목의 다양화: 1,200종(1980) → 2,350건(1991)으로 196% 증가
  - 교역국의 다변화: 89개국(1980) → 124개국(1991)으로 139% 증가
  - 수송수단의 발달로 화물의 대형화, 산지 다변화 등으로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 증대.
  - 컨테이너 전용선 및 카훼리호 신규 취항 등으로 선박 및 항공기 입출항 증가.
- 농림수산물 수입급증에도 불구하고 검역장비 및 전문 인력부족으로 국민건강 보호라는 차원에서 검역기능 보완필요.
  - 농림수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식품안전성 미흡으로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상존.
  - 품목의 다양화로 검역의 전문화 필요.
  - 교역국의 다변화로 국제검역정보 획득 필요.
- 따라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도의 유지, 공정한 무역거래의 확대 발전 차원에서 동식물검역 기능 보완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필요.

### 2) 현황

- 검사방법
  - 서류검사 : 규격, 제조방법, 용도 등 확인(예컨대 수출용 원

그림 5 우리나라의 검역체계



- (1) 식품위생법, 동시행규칙, 식품공전에 근거하여 검사  
정밀검사 필요시 국립보건원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2) 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1991년 부산지소에 검사의뢰하였으나 1992년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수산물 검사소에 의뢰검사
- (3)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동물검역소에 위탁검사
- (4) 식물방역법 및 동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 (5)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가축의 전염병 및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검사

자재, 관광호텔용, 기주식물).

- 관능검사 : 성상, 색깔, 맛, 냄새 등으로 부패 변질 여부 판단
  - 청과물류, 냉동식품, 건조 자연 농산물 및 원형유지 단순가공품.
  - 이미 정밀검사서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일 경우 위생상·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수입농산물.
- 정밀검사 : 이화학적 방법 등으로 성분 및 유해물질 검사.
  - 서류 및 관능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통조림 등 조제식품).
  - 서류 및 관능검사 품목 중에서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품목.

### 3) 문제점 및 대책

#### 가) 식물검역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항구와 공항은 지정되어 있으나 품목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검역상 애로가 많으며 검역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 따라서 화주의 필요에 따라 수입항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품목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항구 또는 공항별로 품목별 수입항구의 지정이 필요함(일본의 예).
  - 곡물류는 강제순환식 훈증 소독시설을 갖춘 사이로 시설 필요.
  - 과실 및 채소류, 묘목류 등 생식물은 신선유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가스의 제어 시설을 갖춘 훈증창고 시설 필요.
  - 목재류는 저목장 시설(컨테이너 야드)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전용창고는 부산 등 일부항구에 약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전용창고가 없어 일반잡화와 함께 보관하고 있거나 검사품과 비검사품이 같이 보관되고 있음. 또한 인천항에는 곡류를 훈증할 수 있는 사이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시설 용량이 절대 부족하고 과채류 등을 훈증 소독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따라서 전용창고의 확보가 필요함. 이를 통해 중국산 농산물의 소독 훈증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지 검역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수입물품에 한해 2명이 검사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1인이 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철저한 검역이 못되고 있음. 이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검역이 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품목별 할당제를 통해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며 불요불급 품목이나 다량수입 품목의 경우 검사인원을 늘려 검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품목별 전문인력 육성 및 검역인원의 확충이 필요함.

- 한편 식물검역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항(부산, 인천, 군산, 마산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식물 검역소는 수입 물량의 증가에 비해 인원 및 장비 등 기본적 필수요건 자체가 미비한 상태임. 따라서 효율적 검역이 사실상 어려움. 또한 국제 관례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는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장비 및 전문인력 육성이 가장 시급한 상태임.

- 검역관 1인당 검역건수

398(1985) → 410(1991)

- 최근 검역인력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일반 농림직 공무원들의 자체이동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역요원으로는 부적합하므로 별도 전문요원 채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들에게 병역 특혜 혜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수입 농산물 검사는 화주의 검사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 농산물의 병충해 관리가 매우 허술한 실정임. 따라서 수입후 가까운 시일내 반드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3만원이하 벌금으로 그 처벌규정이 미흡함.
- 수입품의 불합격 판정으로 인해 폐기 및 반송처분이 내려질 경우 현행 제도상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폐기장 건설 및 반송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됨.
- 현행 보관 창고료는 수입단가를 기초로 산출하고 있음. 농산물은 그 특성상 부피에 비해 수입단가가 낮아 창고료가 낮은 실정임. 따라서 국내유출이 안되더라도 장기간 보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있음. 극단적인 경우 무작정 수

입하고 창고입하후에 매입자를 구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보관창고료를 부피와 연계하여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나) 동물검역

- 1991년까지 수입육류의 위생검사가 농림수산부, 보사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검사실시가 어려웠으나 1992년부터 위생검사가 동물검역소에 위탁됨으로써 검역 및 위생검사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그러나 유해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잔류물질 실험법에 농약 및 중금속에 대한 기준 및 실험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홀트몬 제제에 대한 실험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유해 잔류물질의 허용기준 및 실험법에 대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사부와의 협의 필요.
  - 현재 잔류물질 검사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만 설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육류에도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필요(보사부와 협의).
  - 이러한 사항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어 보사부와 협의가 필요함. 이로 인해 법 시행상 문제점이 나타나도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수정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하부 규칙은 관계부처에 위임하여 자율성 부여 필요.
  - 다양화 되고 증가하는 검역물량에 비해 검역소의 검역인력이 현저히 부족. 검역물량 증가에 비해 인원증가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검역인원 보강이 필요함.
- 검역관 1인당 검역 건수
- 280(1983) → 323(1992)
- 수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절반이상이 부산지소에 집중되어 있으나 정밀검사 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현지 검사가 불가능하고 서울본소로 장거리 수송하여 검사하고 있음. 따라서

부산 지소에서 신속하게 정밀 검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인원 보강이 요구됨.

다) 수산물 검사

- 수산물 검역 신고는 국립검역소(보사부)에서 받고 이에대한 검사는 수산물 검사소(수산청)에서 함으로써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업무가 복잡하게 되어 효율적인 검역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국립 검역소에서 검사의뢰가 없는 경우는 문제되는 수산물이라도 검역이 불가능함. 따라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함(동물검역소의 경우처럼 대통령령에 의해 위탁검사 필요).
- 해산어패류의 검사기준 중금속에 한정되어 있고 생균수, 중심온도, 선도 등은 수산청의 검사기준을 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함. 특히 미꾸라지 등 담수어는 검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해산어류의 잠정 검사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검사기준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검사기준은 보사부(식품위생법)와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수산물 수입증가로 인력이 부족함(수출수산물 검사 간소화로 인력부족은 1993년 중반쯤 완화될 전망이다). 이화학 검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전문인력 양성이 크게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전문인력 육성 및 영입이 필요하고 기존의 검사원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함.

라) 농림수산물분야 검역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안

- 수입 농림수산물에 대한 검역 근거법이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으로 흩어져 있어 부처간 협조가 어려움. 따라서 검역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단일 법규를 제정함과 아울러 농

림수산부 산하에 동·식물검역소, 수산물 검사소를 총괄할 수 있는 검역기관을 설치하여 수입 농림수산물 검역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농림수산부와 보사부의 업무영역이 이원화되어 있어 큰 혼선이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농림수산부가 두차례나 추가고시를 보사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미실현 상태임. 따라서 검역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농림수산물 검역(병충해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은 농림수산부에서 담당해야 할 것임.
- 현재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이 크게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며 검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치 육성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폭주하는 전문검역업무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잔류농약, 항생물질 등의 위생검사대상 농축수산물의 범위 확대.
  - 기존 잔류농약기준은 58개 품목에 대해 38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항생물질 및 성장촉진은 3개품목에 40종이 지정되어 있음.
- 녹색카드제의 도입 추진.
  - 수입업자가 통관전에 수입농산물의 재배중 농약사용내역 등을 검역 당국에 제출토록 함.

## 라. 유통제도 개선

### 1) 수입 농산물 유통현황과 문제점

- 수입농산물의 통관 이후 원산지표시 실종으로 국내농산물과 혼합하거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를 자행, 현격한 국내외가격차에 의한 과다 마진을 획득하고 있으며 유통질서를 곤란하고 있음. 이러한 부정유통행위는 국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현황을 실물경제차원에서 조절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가격메카니즘을 정부당국이 지니지 못함으로써 수입농산물에 의한 가격교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말미암아 국내 생산농가의 영농계획수립이 더욱 곤란함.
- 일시에 다량으로 수입된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 저장목적으로 정부보조에 의해 건설된 창고시설을 점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것은 국내산 농산물의 수급조절기능을 한층 제약하고 있음.
- 정부투자에 의해 각종 시설과 설비가 완비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지정도매인(도매회사) 및 중매업자 등이 수입농산물을 취급함으로써 소비를 지속적으로 조장 내지 확산시키고 있음.
- 농산물을 취급하는 각종 상인들의 업종과 업태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또 이로 인해 각종 세무자료의 은폐, 無記長이 일반화됨으로써 세금포탈이 자행되고 있음.
- 통관후 국내유통에 있어서 품질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포장의 크기, 단위, 표시 등에 관한 규격설정이 미비돼 있음.

### 2) 대책

#### 가) 수입 관련자료 및 정보관리의 철저

-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 시장수급상황에 따른 국내가격 수준을 보다 정밀히 예측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됨.
  - 신용장(L.C) 개설시 最短 주(7일간) 단위의 수입업체, 수이북, 수입품목 및 품종, 수입예정량 등을 관세청의 협조 하에 농림수산부 통산협력관실 내지 유통정보실에 입수, 관리, 공표.
  - 수입농림수산물의 통관시 수입국, 품목 및 품종, 수입량, 수입가격(CIF), 수입처 자료의 즉각적인 정보화.
- \* 1992. 9월 현재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행정의 전산화」(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체계가 완료되지 않고 있으나 기본적인 자료관리는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내 농산물 유통정보 내용속에 포함하여 이용토록 하여야 함 (이와 같은 시장정보관리체계는 미국 USDA 및 州 정부의 시장뉴스(Market News)운용체제를 본 받을 필요가 있음).
- 나)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취급업자의 세무처리 철저관리
  - 수입농산물은 최초의 물품공급자의 인적사항, 공급물량 및 공급가격이 명확하므로 세무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특징을 지님(일반 국내 농산물 유통과 다른 점임).
  - 따라서 재화의 흐름 즉 유통경로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게 됨.
  - 수입농산물 취급 사업자의 업태와 업종을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음(업종과 업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탈세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세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됨).
  - <업태> : 도매업, 위탁판매업, 소매업, 도소매업, 중개대리주선업 등  
 <업종>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류  
 이에 따라서 첫째, 세율이 달라지게 되고, 둘째, 계산서 사

무처리 규정에 따른 거래장부 작성의부 여부가 결정되며, 세제, 보다 정확한 유통업자 관리가 가능하게 됨.

- 한편, 수입농산물에 대한 상품분류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가공한 것과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근거가 됨.
- 특히 부가가치세 부과징수대상 여부를 떠나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상인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구분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일반사업자로 분류하여 장부기장 의무를 부과하며 그에 따른 세액을 징수토록 함(현행 일반사업자의 세율은 10%이며 과세특례자가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업일 경우 3.5%, 그 이외의 경우는 2.0%임).
- 현재 수입농산물중 과세되는 미가공식품은 바나나, 파인에플, 커피두(각, 피와 웨이스트 포함), 코코아두(원상, 분쇄하여 볶은 것, 피와 웨이스트 포함) 이며 미가공 식료품 일지라도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GATT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음(부표 3 참조).

#### 다) 포장 및 표시제도의 법령 제정

- 국내산 위장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표시제 강화
  - 현재 농산물 66개 품목, 임산물 9개 품목, 수산물 10개 품목에 대해 실시.
  - 그러나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함. 따라서 대상품목의 추가지정(토끼고기, 감자, 땅콩 등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 및 통관후 유통단계에서의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부표 3 참조).

- 미국의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1976년 제정, 1981년 개정)나 일본의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JAS) 등과 같은 법령을 제정하여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함.
- 농산물의 포장거래, 규격화 권장 및 행정지도 강화
- 포장의 규격화(소, 중, 대형의 크기를 규정함)와 표시의 의무화(상품명, 제조·포장일자, 수입업자 또는 배분업자명, 주소, 내용물의 순중량, 포장에 관련된 기자재, 용도, 용기 등의 설명서, 표시의 크기, 위치, 특징 등을 세밀하게 명시토록 함).

상품표시 예 :

- 유통기한
- 영업허가 및 품목신고
- 품명
- 원료명
- 원료의 원산지명(혼합의 경우에는 비율표시)
- 실중량
- 제조일자
- 제조회사명
- 제조회사주소(전화번호 포함)
- 기타(상표, 의장등록 등)

- \* 1992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방안 第3章 농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확대·발전시켜야 됨.

라) 정부투자에 의해 개장된 법정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나 중매업자가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市場開設者에게 구입선 및 판매선명, 품목·수량 등을 보고토록 농림수산부 부령으로 규정하며 별도 관리토록 함(시장사용료 별도 징수, 거래내용의 세무당국 통보 등).

마) 소비자 보호운동 관련단체와의 유기적 연대강화

- 각종 수입관련자료의 주기적인 제공.
- 국내산 농산물 소비의 촉진.

바) 정부투융자에 의해 건설한 농수산물 저온창고 및 일반창고에 관한 법령 제정

- 창고업의 허가제, 창고업자의 책임과 의무사항규정 등.
- 1976년 제정된 미연방정부의 창고법 참조(7 U.S.C 241-273).

사)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와 제도가 시행되고 지도·관리될 수 있도록 수입농산물 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며 상공부의 무역위원회와 업무연계 도모

- 전반적인 수급조절 예측.
- 탄력적인 관세제도 운용을 위한 기초정보 분석.
- 국내 농산물 피해예측 및 구제방안 수립.
- 가격 연구기능.
- 부정광고나 불공정 광고해위 등의 모니터 및 고발.

### 3) 향후 연구과제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의 보완

- 농산물 수입업자에 의한 매점·매석 행위 규제방안.
- 시장지배적 사업자 범주의 확대방안.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에 관한 규정.

나) 관세법 및 세법(소득세·부가가치세)의 개정보완

- 농산물 종량세제의 도입.
- 고가 농산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규정.
- 농산물의 반덤핑에 관한 규정.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의 보완.

다) 수입농산물의 경품·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제정

라) 중국 농산물 유통구조실태조사

#### 마. 조사연구 강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북방 농림수산업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중국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각종 정보와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 북방 농림수산업정책, 무역정책 동향 파악.
  - 대북방 농림수산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민간기업, 단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활동.
  - 중국농업 연구요원 파견(중국 2명, 일본 1명)
- 주중 한국대사관에 농무관 파견.
  - 앞으로 확대될 한중 농림수산업분야 협력분야 전담 조정.

부표 1 중국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추이, 1987~90

단위: 千M/T, 백만불

	1987		1988		1989		1990		1987-1990 연평균증가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곡물류	7187	979	6542	1118	6221	1169	3678	492	-20.0
옥수수	3847	314	3522	353	3497	445	2877	340	9.1
쌀	989	182	705	185	339	104	303	84	-32.6
수수	152	11	229	23	590	60	384	44	-36.2
콩	1714	361	1459	379	1171	349	910	219	-19.0
강남콩	47	18	69	28	105	46	214	100	65.7
○ 축산물		335		389		422		538	17.1
돼지고기	89	151	59	1056	81	141	113	189	8.3
쇠고기	36	61	55	110	56	103	87	146	34.2
닭고기	19	27	31	50	33	58	45	86	33.3
달걀	54	41	49	40	32	26	31	29	-16.9
○ 과실류	239	100	308	125	237	102	232	104	-1.0
사과	58	25	95	40	71	31	61	27	1.7
오렌지	76	35	83	39	64	30	64	29	-5.6
배	46	17	71	25	58	21	53	22	4.8
수박	18	4.6	23	5.3	16	3.7	21	6.6	5.3
○ 채소류	483	222	715	349	749	381	755	364	16.1
감자	22	3	71	9	77	10	82	12	55.0
양파	5.1	0.8	4.4	0.8	5.8	1.1	401	0.7	-7.0
마늘	70	26	100	40	95	39	101	46	12.9
오이	49	10	42	10	43	10	42	9	-5.0
무	10	2.5	13	3.1	10	2.8	14	3.8	11.9
배추	11	2.6	15	3.7	12	3.0	16	3.8	13.3
○ 건과류	77	117	77	117	73	107	68	103	-4.1
밤	46	81	46	81	34	59	34	60	-9.6
곶감	3.4	4.8	3.4	4.8	6.4	9.5	4.1	6.6	6.4
대추	2.6	2.4	2.6	2.4	2.9	3.1	2.0	2.7	-8.4
호두	15	27	15	27	16	26	14	23	-2.3

부표 1(계속)

	1987		1988		1989		1990		1987-1990 연평균증가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건채류		99		99		129		180	22.1
건조버섯	1.8	16	1.8	16	3.5	28	4.3	29	33.7
건고추	26	19	26	24	32	38	34	28	9.4
고추가루	2.3	1.9	2.6	2.4	3.7	3.8	3.8	3.6	18.2
대두박	179	604	275	810	267	899	307	1119	19.7
건고구마	239	100	308	125	237	102	232	104	-1.0
매니옥	483	222	715	349	749	381	755	364	16.1
○ 수산물	77	117	77	117	73	107	68	103	-4.1
냉동새우		99		99		129		180	22.1
조개		666		940		782		887	10.0
민물고기	179	604	275	810	267	899	307	1119	19.7

주: 연평균 증가율(%)은 금액기준임.

## 부표 2 한중 교역관계의 진전

1983. 9 : 중국 민항기 불시착(양국간 최초로 정식 국호를 사용하는 문서에 서명)
1989. 6 : 컨테이너 정기선 직항로 개설(인천, 부산-천진, 대련, 청도, 위해, 상해)
- 8 : 대한항공 전세기, 한국 비행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상해 직항노선 취항
1990. 1 : 중국과 국제특급 우편업무 개시
- 1 : 한국의 수협중앙회와 중국의 황하어업협회간 어선사고 해결원칙 합의
- 5 : 이규성 당시 재무부장관 ADB 북경 총회 참석차 중국 방문
- 9 : 인천-위해간 카페리호항로 개통(주 2회 왕복)
- 10 : 한중간 무역사무소 개설협정 체결
1991. 1 : 주북경 한국무역대표부 개설
- 4 : 주 서울 중국무역대표부 개설
- 11 : 중국외교부장 및 대외경제무역부장 방한(APEC회의 참가)
- 12 : 무역협정 체결(1992. 2. 1 발효)
- 12 : 인천-천진간 카페리 항로 개설
1992. 3 : 한국상공부 제1차관보 방중(중국대외경제무역부 초청)
- 4 : 투자보장협정 가서명(4. 11)
- 4 : 한국의무부장관 방중(ESCAP 총회 참가)
- 5 : 투자보장협정 서명(5. 2)
- 5 : “대한민국 상품전시회”(92. 5. 12~16, 중국국제전람중심)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품전시회” 개최('92. 5. 26~6. 1, KOEX)  
- 양국 국호·국기의 공식사용
- 8 : 한중수교(8. 24)

부표 3 관세율표상의 미가공식품품 제외 품목

관세율표 번호	품 목
1105	감자(분, 조분), 감자(플레이크)
1106-30-0000	과실류의 분과조분
0106	식용에 적합지 않은 경우(양서류, 파충류, 지렁이, 갯지렁이 등)
0301	관상용 어류(금잉어, 열대어)
0403	요구르트,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케피어
0404	유장분말, 유장
0405	버터
0406	치즈
0407	천연꿀
0410	거북알, 살랑겐등우리
1501	라아드, 가금지 등 동물성 유지
1502	우지
1504	상어의 간유, 어류의 유지등 수산물 동물성 유지
1505	울그리스, 란놀린
1506	우각유
1507	대두유
1508	낙화생유
1509	버어건, 올리버유
1510	올리브유
1511	팜유
1512	해바리기씨유
1513	야자유 등
1514	유채유, 겨자유
1515	아마인유, 옥수수유, 피마자유, 동유, 참기름, 들기름, 미강유 등
1516	우지, 고래기름, 낙화생유, 면실유 등
1517	마아가린, 쇼트닝
1518	탈수피마자유 등
1107	맥아
1108	밀, 옥수수, 감자, 매니옥, 고구마(전분)

부표 3(계속)

관세율표 번호	품 목
1109	밀 글루텐
1209	사탕무종자, 비트종자, 알파파종자, 클로버, 패스큐종자 등
1210	호프, 루폴린
1213	곡물의 껍·껍질
1214	루우산, 사료용근채류
1301	셀각, 각, 수지 등 식물성 액즙
1302	아편, 감초액기스, 호프액즙, 인삼, 한천 등
1401	대나무, 등나무 등
1402	케이폭, 식물성 헤어, 충전용 식물성 재료
1403	수수류비, 브러쉬 및 그 재료
1404	오배자, 염색용 식물성 재료, 면리드, 저파, 삼아피, 수피, 떡각잎, 멩게잎
0501	인모와 웨이스트
0502	돼지털, 멩돼지털 및 웨이스트
0503	말털
0505	새털
0507	상아, 서각, 아이보리, 녹용, 녹각 등
0508	산호, 진주패각, 청패각 등
0509	해면
0510	용연향, 해리향, 사향, 우황 등
0601	튜립, 백합 등 구근류
0602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등 수목류
0603	카네이션, 국화 등 절화류
0604	은행잎 등 식물의 잎
0814	감귤류 및 멜론 껍질
0905	바닐라두
0906	계피, 계피꽃
0907	정향(과실, 꽃, 화경)
0908	육두구, 메이스, 소두구

부표 3(계속)

관세율표 번호	품 목
0909	아니스, 코리앤더씨, 커민의 씨, 케리웨이씨 등
0910	생강, 샤프란, 심황, 타임·월계수잎, 케레이 등
2006	파인애플, 생강, 연뿌리(조제)
2007	잼류, 감귤류(조제)
2008	피넛버터, 땅콩(조제), 방(조제) 배, 살구, 버찌, 복숭아(조제) 등
2009	오렌지주스, 그레이프주스, 레몬·라임류 등 과일·채소주스류
2101	인스턴트커피, 커피조제품, 차·마태조제품 등
2102	양조효모, 증류효모, 제빵효모, 배양·활성효모 등 누룩, 베이킹파우더
2103	간장, 코마토케, 소오스, 겨자, 된장, 춘장, 고추장 등 장류 메주, 마요네즈, 혼합조미료
2104	육류조제품, 어류조제품, 채소조제품(스우프류)
2105	아이스크림, 빙과류
2106	두부, 단백질농축물, 콜라베이스, 과일향 음료베이스 등 인삼차, 김 등 해조 조제품, 커피프림, 벌꿀 조제품
2201	광수와탄산수, 염음과준, 물
2202	물(착색), 인삼 및 과즙음료
2203	맥주
2204	포도주
2205	베르뭇(포도주)
1804	코코아 버터
1805	코코아분말
1806	코코아분말(조제), 초코릿
1901	유아용 제외 분유, 우유
1902	스파케티, 마카로니, 파스타, 국수, 당면, 라면
1903	타피오카
1904	콘플레이크, 콘 등 곡물조제품
1905	귀리빵, 스위스 비스킷 등, 식빵, 건빵, 파이와케이크, 미과

부표 3(계속)

관세율표 번호	품 목
2001	오이(조제), 양파, 과실, 쪽파, 토마토 등 조제품 (채소 과실 조제품)
2002	토마토(조제)
2003	표고, 송이(조제)
2004	감자, 스위트콘(조제)
2005	균질화 채소(조제), 감자(조제), 완두, 콩(조제)
2206	사과주, 배술 등 과실 발효유, 청주, 약주, 탁주, 와인쿨러
2207	근주정, 에틸알코올
2208	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소주, 인삼주, 고량주 등 주류
2209	양조식초
2301	육, 식용설육의 분, 근분, 펠리트(비식용), 수지박 등
2302	옥수수박, 미강, 밀기울 등 곡물의 박, 채두류박
2303	전분박, 설탕박, 양조박
2304	대두박
2305	낙화생박
2306	면실유박, 아라인박, 해바라기박 등, 참깨, 들깨유박
2307	포도주박
2308	도토리, 마로니에 열매 등 식물성 부산물
2309	개·고양이사료, 양돈용, 양계용, 어류용 배합사료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사료첨가제
1519	스테아린산, 올네인산, 톨유지방산, 세틸알모올 등
1520	글리세롤
1521	카나버왁스, 종려왁스, 면·아마왁스 등 식물성 납
1522	데그라스
1601	소시지
1602	가금육조제품,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조제품(조제, 저장육), 동물의 간장(조제) 등 칠면조고기(조제)
1603	육엑스, 육즙, 어류엑스, 어류즙
1604	연어, 청어, 정어리 등 수산물 어류조제품, 쥐치포, 생선묵, 게살 등

부표 3(계속)

관세율표 번호	품 목
1605	계살, 새우, 바다가재 등 갑각류 조제품(굴, 홍합, 바지락 등)
1701	사탕수수당, 사탕무우당, 자당
1702	유당, 유당시럽, 단풍당, 포도당, 과당 등 당류, 인조꿀, 맥아당
1703	당밀
1704	추잉껌, 감초엑스, 드롭프스, 캐러멜, 캔디류 등 과자류
1801	코코아두
1802	코코아두의 각과피, 웨이스트
1803	코코아페이스트
2402	엽권련, 필터담배
2403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

빈

면

## 연구자료 D73-2

중국 농업 시리즈 ②

### 한·중 농림수산분야 협력방안

---

---

적은날 1992. 12.                      펴낸날 1992. 12.

발행인 허 신 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적은곳 (주)문 원 사 739-3911~4

---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